

2025학년도

행복한 어울림 속에 함께 성장하는 용진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안내

2025. 3. 21.(금) 15:00 / 시청각실(본관 1층)



YONGJIN MIDDLE SCHOOL
용진중학교

55351 완주군 용진읍 상운길 11

<http://yongjin.ms.kr>

2025학년도

행복한 어울림 속에 함께 성장하는 용진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안내

2025. 3. 21.(금) 15:00 / 시청각실(본관 1층)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안내 일정

♣ 등록... 14:40~15:00

♣ 1부... 15:00~15:15

- 개회사
- 국민의례
- 학교장 인사
- 학교운영위원 소개
- 교직원 소개

♣ 2부... 15:15~16:00

- 2025학년도 교육과정 안내
- 학부모 연수

♣ 3부... 16:00~16:30

- 학부모회 조직(임원 선출)

♣ 4부... 16:30~

- 담임교사와 상담 : 진로 및 생활지도

순	자료 내용	쪽수
I	2025학년도 학교 현황	1
II	2024학년도 주요 교육활동 실적	5
III	2025학년도 주요 교육활동 추진계획	7
IV	학부모 연수 자료	14
	01. 2022 개정교육과정 이해	14
	02. 2025학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15
	0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안내	17
	04. 학생 봉사활동 운영 안내	19
	0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계획	20
	06. 청렴 연수 - 청렴은 세상을 더 밝게 합니다	23
	07.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자료	26
	08. 환경 연수 -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환경급식 홍보영상 안내	27
	09.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28
	10. 인성인권안전부 운영 계획	32
	11. 학교폭력 예방교육	38
	12.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40
	13. 자녀를 위한 인권·인성 교육	42
	14. 도박 예방 교육	44
	15. 마약류 및 흡연 예방교육	46
	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48
	17. 학부모 보건 교육(성교육, 감염병, 미세먼지)	50
	18. 학부모 정보통신윤리 교육	55
	19. 위(Wee)클래스 상담실 운영 계획	58
	20. 학생 성장을 위한 독서인문교육	59
	21. 자기주도적 삶의 기초역량, 기초학력 보장	60
	22. 교육복지중점학교 운영	61
V	2025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총괄)	62
VI	학부모회 조직(임원선출) 안내	63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안내

I 2025학년도 학교 현황

1. 일반현황

가. 학교 교훈 : 바른 행동과 실력으로 꿈을 키우자

나. 학교 상징

교표	용진	교목	소나무	교화	장미	교조	까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의 원으로 구성 • 용(龍)자를 형상화 • 두 뿔(角)은 진(進)행을 의미 • 색상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赤) : 강인한 힘 - 황(黃) : 찬란한 미래 - 청(靑) : 안정된 기반 		<p>선비 기상</p> <p>.....</p> <p>영원 불변함 성실과 인내심 자기 향상심</p>		<p>정열·열정</p> <p>.....</p> <p>사랑과 기쁨 다정과 다감 협동과 변영</p>		<p>기쁜소식</p> <p>.....</p> <p>영특하고 깔끔함 새소식 도조/길조</p>	

다. 교가

운장산 푸른 줄기 세차게 뻗어 소양천 맑은 구슬 피는 새희망
울림도 우렁차게 종을 울려라 용처럼 나아가자 용진중학교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알차게 살자 슬기여 빛나거라 용진중학교

2. 학교 연혁

- 1969. 10. 4. 9학급 설립 인가
- 1970. 3. 6. 개교
- 1980. 2. 27. 15학급 편성 인가
- 2006. 11. 24. 학교 개축공사 준공으로 현 교사로 이전
- 2018. 11. 22. 가온누리(체력단련장) 개축, 미술실, 토론실, 도서관 리모델링
- 2019. 11. 5. 힐링산책로, 주차장, 담장 설치 및 옥외 급수대 등 개선
- 2020. 11. 5. 용진관(다목적 체육관) 준공
- 2021. 9. 1. 제19대 조영민 교장 부임
- 2025. 1. 8. 제53회 졸업식(졸업생수 35명), 총 6,514명 졸업
- 2025. 3. 1. 6학급 편성
- 2025. 3. 1. 제56회 신입생 52명 입학

3. 학생 현황

학년	1		2		3		특수	계
	1	2	1	2	1	2		
학급	1	2	1	2	1	2	1	7
남	13	13	12	13	9	8	(1)	68
여	13	13	11	9(1)	14	15	(1)	75
소계	26	26	23	22(1)	23(1)	23	(2)	143
총계	52		45(1)		46(1)		(2)	143

4.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행정					총계
	교장	교감	부장 교사	교사	특수 교사	보건	상담	소계	일반직	교무 실무사	시설 관리원	안전 지킴이	소계	
남	1		1	2				4	1		1		2	6
여		1	2	7	1	1	1	13	1	1	1	1	4	17
계	1	1	3	9	1	1	1	17	2	1	2	1	6	23

5. 교과별 교사 현황

구분	도덕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체육	음악	미술	기·가	영어	한문	중국어	상담	특수	보건	계
정원	1	2	1	2	2	1		1	1	1			1	1	1	15
순회			2				2			2	1	1				8

6. 시설 현황

시설	교 지(m ²)					건 물 (실/동)					
	총면적	교사 부지	운동장	일반 교실	관리실	보건실	회의실	시청 각실	음악실	미술실	
현황	17,344	10,344	7,000	6	4	1	1	1	1	1	
시설	가사실	과학실	급식실	체력 단련실	체육관	컴퓨터실 (서버실)	학생 자치실	성적 처리실	교육 복지실	인성 인권실	
현황	1	1	1	1	1	1	1	1	1	1	
시설	통합 지원반	방송실	도서실	수학 교과실	상담실	영어 교과실	화장실	숙직실	동아리실	창고	
현황	1	1	1	1	1	1	14	1	6	2	

7. 학급 담임 및 부담임

1학년			2학년			3학년		
1반	담임	한*희(체육)	1반	담임	박*성(수학)	1반	담임	유*환(기가)
	부담임	김*비(도덕)		부담임	이*미(과학)		부담임	김*빈(상담)
2반	담임	채*원(영어)	2반	담임	문*수(국어)	2반	담임	이*우(수학)
	부담임	송*엽(사회)		부담임	정*라(보건)		부담임	김*령(국어)
통합교육지원반					이*경(특수)			

8. 일과 및 일정표

가. 주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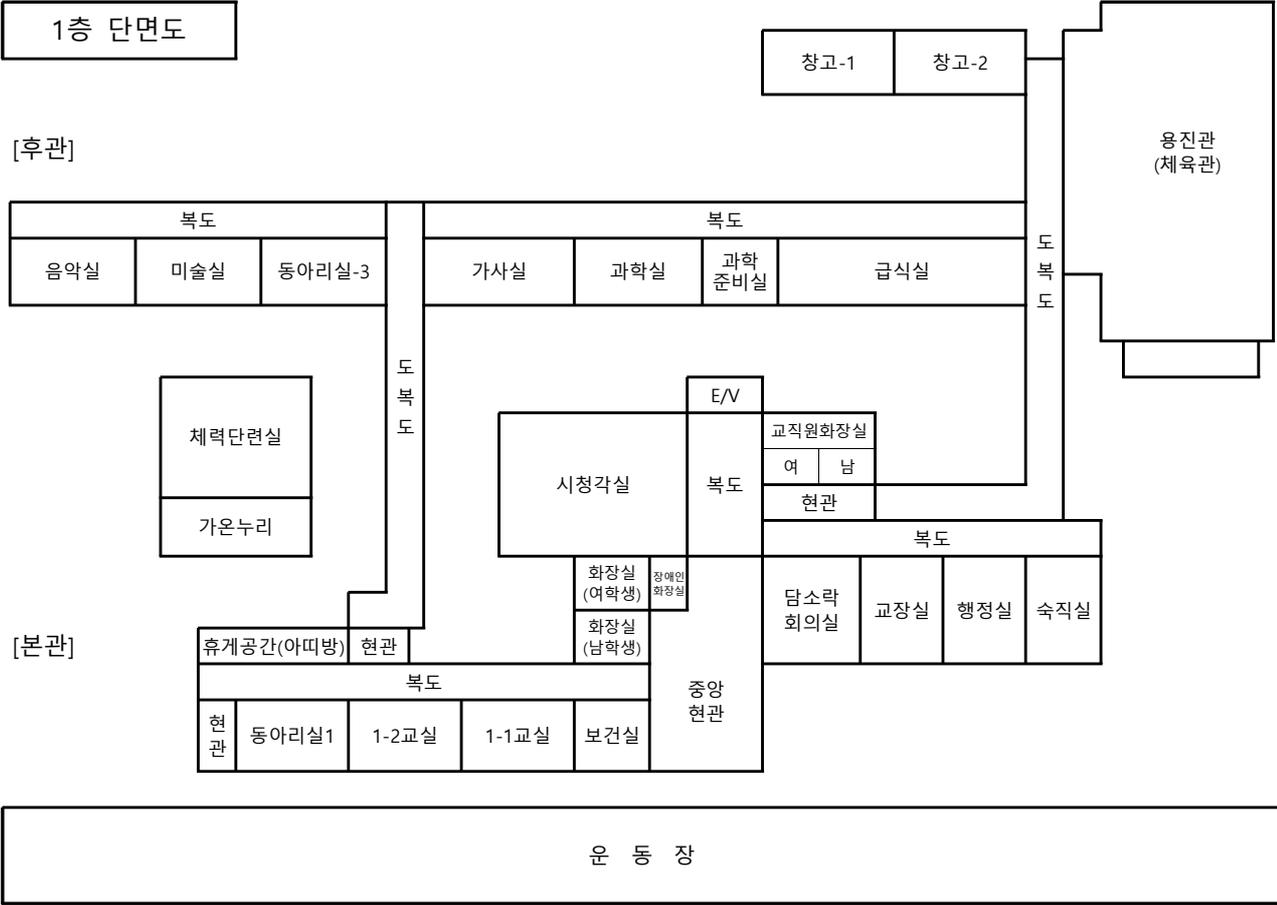
요일	월	화	수	목	금
수업교시	7교시	7교시	5교시	7교시	7교시

나. 일과 및 일정표(*요일에 따라 달라짐-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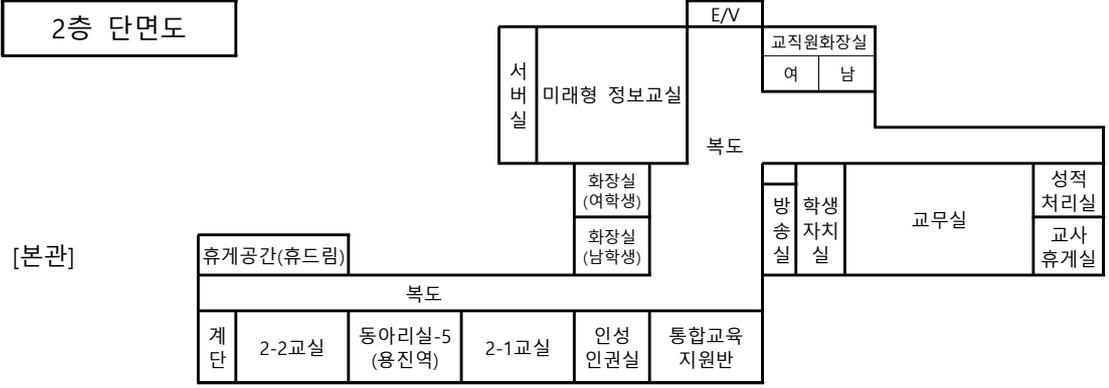
7교시용(월, 화, 목, 금요일)				5교시용(수요일)			
구분	시간	소요시간(분)	비고	구분	시간	소요시간(분)	비고
조회	08:40~08:50	5분		조회	08:40~08:50	5분	
1교시	08:50~09:35	45분		1교시	08:50~09:35	45분	
2교시	09:45~10:30	45분		2교시	09:45~10:30	45분	
3교시	10:40~11:25	45분		3교시	10:40~11:25	45분	
4교시	11:35~12:20	45분		4교시	11:35~12:20	45분	
점 심	12:20~13:15	55분		점 심	12:20~13:15	55분	
5교시	13:15~14:00	45분		5교시	13:15~14:00	45분	
6교시	14:10~14:55	45분		청소 및 종례	14:00~14:15	15분	
7교시	15:05~15:50	45분		방과후 1교시	14:15~15:00	45분	
청소 및 종례	15:50~16:05	15분		방과후 2교시	15:10~15:55	45분	

9. 교사(校舍)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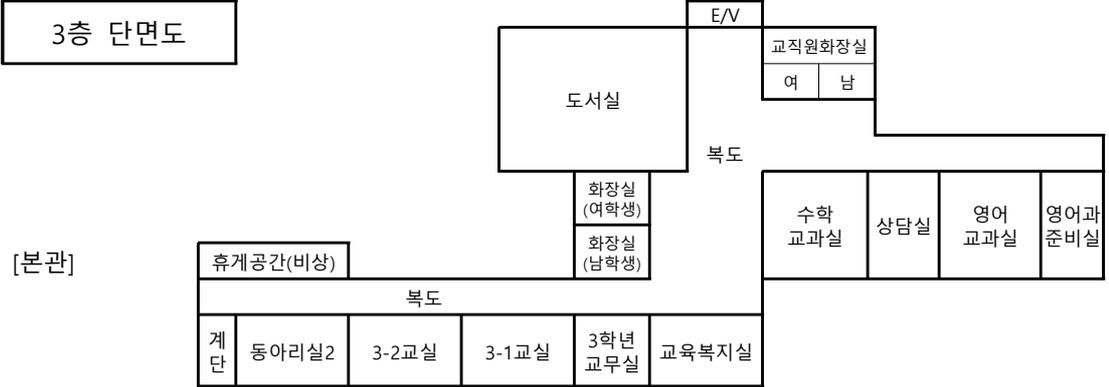
1층 단면도



2층 단면도



3층 단면도



1. 교육활동 분야

- 학교-마을 교육과정 운영: 294만원(완주교육지원청)
-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등): 811만원(전라북도교육청)
- 방과후학교 교과 및 특기적성 부서 운영: 1,707만원(전라북도교육청, 완주교육지원청, 완주군청, 학교 자체)
- 찾아가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설명회 5회 운영(전라북도교육청)
- 교육발전특구 학생맞춤형프로젝트(완주창의융합인재, 글로컬세계시민): 227만원, 535만원
- 완주자율교육과정운영(교과통합 프로젝트 체험수업 2회 등): 800만원(완주교육지원청)
- 완주창의융합인재교육과정 운영(완주교육한마당 영상 출품) : 240만원(완주교육지원청)
- 미래교육 프로그램 Future + 운영(자유학기제 연계) : 200만원(완주교육지원청)
- 학교 맞춤형 진로체험 운영: 315만원(완주교육지원청)
- 학교로 찾아오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전주교육문화회관)
- 환경·생태교육: 50만원(완주교육지원청)
- 학교 자율선택과제 운영: 300만원(전라북도교육청)
- 맞춤형 학습지원 기초학력 운영: 1,420만원(전라북도교육청)
 - 두드림학교 운영 : 200만원
 -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 1,120만원
 - 여름방학 기초학력 쑥쑥 테마캠프(올빼미 독서캠프) 운영 : 100만원
- 코로나19 대응 방역 소독 및 물품구입비: 398만원(전라북도교육청, 학교자체)
- 코로나19 대응 방역 활동 자원봉사자 운영사업: 620만원(전라북도교육청)
- 학교흡연예방사업: 70만원(완주교육지원청)
- 아침결식개선사업: 2,622만원(완주교육지원청)
- 학생응급처치(심폐소생술)교육: 90만원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87만원
-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완주군보건소
- 학교상담실 운영(상담 프로그램, 행복한 등교맞이 캠페인 등): 340만원(전라북도교육청)
- 제12회 용진한마음 축제 운영: 전시, 체험, 학급공연, 동아리 공연 등
- 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 1337만원(전라북도교육청)
-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전 운영: 110만원(전라북도교육청)
- 여름방학 중 교내 영어캠프 운영: 160만원(전라북도교육청, 학교자체)
- 2024년도 완주도서관 「찾아가는 저자와의 만남」 프로그램 운영
- 교내 과학 탐구대회, 영어 단어왕·문장왕 경시대회 운영

2. 교육환경 개선 분야

- 운동장 정비공사 : 310,000,000(3억1천만원)
- 교실바닥 마루교체 : 8,000,000(8백만원)
- 스마트철만 보급 사업 : 40,000,000(4천만원)
- 후관동 옥상방수 공사 : 20,000,000(2천만원)
- LED 전광판 설치 : 25,000,000(2천오백만원)
- 교육복지실 설치 : 25,000,000(2천오백만원)
- 수목정정공사 : 4,700,000(4백칠십만원)

3. 2024학년도 졸업생 진학 현황

- 졸업생수 : 35명
- 진학학교
 - 일반계고 : 24명(진주 12명, 완주 9명, 익산 2명, 김제 1명)
 - 마이스터고 : 3명
 - 특성화고 : 8명

4. 2024학년도 장학금 지급내역

지원기관	총지급액	대상자
용진중 1회 졸업생	1,000,000원	강*린, 유*혁, 고*, 박*혁, 김*유
용진중 10회 졸업생	400,000원	김*진, 서*언, 강*린, 최*별
용진중 11회 졸업생	550,000원	김*진, 김*제, 김*원, 김*유, 전*연, 김*건, 박*혁, 손*현, 이*서, 이*희, 이*명
용진중 동창회	500,000원	김*진, 한*설, 이*희, 김*원, 김*진
용진농협	100,000원	이*서
용진읍이장협의회	200,000원	손*현, 전*연
용진읍새마을부녀회	700,000원	이*기, 김*은, 권*선, 하*원, 오*율, 김*제, 이*녹, 이*지, 최*빈, 서*언, 이*명, 김*명, 김*영, 전*영
주안교회	400,000원	강*준, 김*건, 최*별, 강*경
성광교회	300,000원	송*리, 임*혁, 이*인
신입생 입학 축하 장학금 (용진읍(주)서진이엔지-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2,500,000원	2025학년도 1학년 입학생 52명 지급 예정
합계	6,650,000원	

5. 2025학년도 예정 사업

-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 전북형 미래교실 리모델링 사업

1. 수업-독서-체험을 통합한 교과통합 수업 활성화로 진로, 인성, 학력 향상 도모

- 현장체험학습을 모듈별 주제 탐구를 하도록 진행하여 놀고, 즐기고, 기록하여 머리에 남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교실과 지역을 적극적으로 연계한 교과 통합교육과정 주간(1·2학기, 연 2회) 운영
- 독서의 생활화: 교과별 한 학기 1권 이상 독서 및 기록의 생활화
-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인 진로 탐색 및 설계 능력 향상

2. 마음의 힘, 행동으로 용진! 용진!

- 1학교 1인성 브랜드 추진
- 학교 자기주도학습플래너 작성을 통한 인성 함양

- 작년도 돌아보기
- 올해 기대하기
- 나의 버킷리스트
- 자기주도 학습플래너
- 포트폴리오(외부 강연 특강, 체험 활동 기록, 독서 활동 기록)
- 시험 기간 플래너 사용 예시

3.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운영(12개 반)

- 학생 선택 및 최적의 조건을 위해 12개 반 편성
- 쫄쫄쫄(뜨개질 동아리), 코딩부, 밴드부, 나만의 책세계부, 댄스부, 또래상담부, 애니메이션부, 좋은 책 읽기부, 보드게임부, 축구부, 지구사랑부, 공예부

4. 스포츠클럽 종목 동아리 운영

- 학생 선택 및 최적의 조건을 위해 학년별 3개반 편성
 - 1학년 : 배드민턴, 건강스트레칭, 축구
 - 2학년 : 요가, 배드민턴, 축구
 - 3학년 : 걷기, 배드민턴, 축구

5.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 운영(완주군통합교육지원센터 지원)

- 목적 :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고 느낌
- 대상 : 1학년
- 기간 : 2학기
- 시간 : 매주 화요일 6, 7교시 주제선택 활동(국어, 사회)

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목적 : 학생의 소질·적성 개발 및 취미·특기 신장 교육의 기회 제공, 방과 후 과외활동의 교내 흡수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농산어촌 지역에 위치해 교육환경 보완 및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
- 대상 : 전학년
- 기간 : 1학기 운영기간 : 2025.3.26.(수) ~ 2025.6.18.(수)
2학기 운영기간 : 2025.8.27.(수) ~ 2025.12.10.(수)
- 시간 : 매주 수요일 6, 7교시(14:30~16:10)
- 특기적성 프로그램 : 밴드부, 난타부, 댄스부, 사진부, 기타부, 배드민턴부, 축구부, 생활미술부, 캘리그래피부, 마음 두드림부

7. 동아리 운영

가. 학교스포츠클럽 동아리

순	학년	동아리명	담당교사	장소	인원	시간
1	1	배드민턴	박*성	용진관	16	월 6교시
2		건강스트레칭	정*라	학생회실	10	
3		축구	조*섭	운동장	24	
4	2	요가	문*수	학생회실	5	월 5교시
5		배드민턴	박*성	용진관	18	
6		축구	조*섭	운동장	8	
7	3	걷기	김*령	용진관	13	월 7교시
8		배드민턴	이*우	용진관	19	
9		축구	조*섭	운동장	14	

나.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순	동아리명	담당교사	장소	인원	시간
1	쫄쫄쫄(뜨개질)	박*성	2-1 교실	20	금 7교시 (전학년)
2	코딩부	유*환	3-1 교실	9	
3	밴드부	고*화	밴드실	9	
4	나만의 책세계부	김*령	정보실	12	
5	댄스부	이*미	용진역	10	
6	또래상담부	김*빈	상담실	10	
7	애니메이션부	한*순	시청각실	12	
8	좋은 책 읽기부	문*수	도서관	17	
9	보드게임부	송*엽	수학실	23	
10	축구부	이*우	운동장	18	
11	지구사랑부	김*비	1-1 교실	8	
12	공예부	이*경	통합지원반	2	

8. 인성교육중점학교

- 삶, 세상과 연결된 교과통합 프로젝트 실시
- 바른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미래 인재 육성

9. 교원치유중점학교

- 학교 구성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교원치유중점학교 운영
- 배움 중심의 교사 학습공동체 및 수업 혁신

10. 각종 교육 및 특강

- 학생들의 정서안정, 진로탐색 등을 위한 상담, 검사 등 적극 실시
- 교과통합 프로젝트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활동 : 2회
- 따뜻한 학교, 학교-마을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 : 연중 운영
-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험활동 및 외부인사 초청 특강 : 각 2회
- 봉사활동 소양교육, 인성교육, 바른말 쓰기(언어순화) 교육 : 외부 초청 강연
-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마음의 힘, 행동으로 용진! 용진!’의 적극적인 활용

11. 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성표

구분			1학년						구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자유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시수	학교자율	시수	학교자율	1학기	2학기					
교과 (군)	학교 자율	정보		0		0							
		교양		0		0							
		교과		0		0							
	국어		85	0	68	0	0	0	주17				
	사회 역사 도덕	사회	51	0	34	0	0	0	주17				
		역사	0	0	0	0	0	0	0				
		도덕	17	0	17	0	0	0	0				
	수학		68	0	51	0	0	0	주17				
	과학 기술가정 정보	과학	51	0	34	0	0	0	주17				
		가정	34	0	17	0	0	0	진17				
		정보	0	0	0	0	0	0	0				
	체육		51	0	51	0	0	0	0				
	예술	음악	17	0	17	0	0	0	0				
		미술	34	0	34	0	0	0	0				
	영어		51	0	34	0	0	0	주17				
	선택	교과 선택	한문										
			외국어	34	0	34	0	0	0	0			
		교양 선택	환경	0	0	0	0	0	0	0			
보건													
진직			17	0	17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소계		510	0	408	0	0	0	0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자치활동		8	0	8	0	0	0					
	동아리 활동	동아리활동	22	0	22	0	0	0					
		학스	스포츠	17	0	17	0	0	0				
			체육 대체	0	0	0	0	0	0				
	진로활동		4	0	4	0	0	0					
	소계		51	0	51	0	0	0	0				
	자유 학기 활동	진로탐색활동		기술가정				0	17				
주제선택활동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0	85						
총 수업 시간 수			561	0	459	0	0	0					
학교자율시간			(교과군)		(과목명)		(시수)						
교과 (군)	학교 자율	정보											
		교과											
		교양											
	국어		68	68	68	68	68	68					
	사회 도덕	사회	0	0	34	34	34	34					
		역사	51	51	34	34	34	34					
		도덕	34	34	17	17	17	17					
	수학		68	68	51	51	51	51					
	과학 기술가정 정보	과학	68	68	68	68	68	68					
		가정	51	51	51	51	51	51					
정보		0	34	0	0	0	0						
체육		51	51	34	34	34	34						
예술	음악	17	17	34	34	34	34						
	미술	17	17	34	34	34	34						
영어		51	51	68	68	68	68						
선택	교과 선택	한문											
		생활외 국어	34	0	0	0	0	0					
	교양 선택	환경	0	0	0	0	0	0					
		보건	0	0	0	0	0	0					
		진로와 직업	0	0	0	0	0	0					
교과 시수 합계		510	510	493	493	493	493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활동		8	8	8	8	8						
	동아리활동		17	17	17	17	17	17					
	봉사활동		5	5	5	5	5	5					
	진로활동		4	4	4	4	4	4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합계		34	34	34	34	34	34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기존창체활동 (~68)		17	17	17	17	17						
	창체순증		0	0	0	0	0						
	교과감축		0	0	17	17	17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합계		17	17	34	34	34	34					
총 수업 시간 수			561	561	561	561	561						

※ 선택교과 : 한문/중국어

※ 학교스포츠 클럽(학기 당 18시간 연 34시간): 체육대체(3학년) 실시

12. 2025학년도 학사일정 (학사일정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1학기

월	주	교육 행사										수업일수												
		월		화			수			목		금			토	주계	누계							
3	1	3	3·1절 대체공휴일		4	입학식, 시업식 새학년맞이주간			5	교무회의 새학년맞이주간			6	개교기념일		7	기초진단평가			8	3	3		
	2	10	학생상담주간			11				12				13	학급회의		14	맞춤형학업성취도 자율평가			15	5	8	
	3	17	학부모상담주간			18				19				20	봉사활동		21	교육과정설명회			22	5	13	
	4	24				25				26				27	진로활동		28				29	5	18	
4	5	31				1	영어듣기평가(1년)			2	교무회의			3	영어듣기평가(2년) 학급회의		4	영어듣기평가(3년)			5	5	23	
	6	7				8				9				10	봉사활동		11				12	5	28	
	7	14				15				16				17	교과통합체험학습		18				19	5	33	
	8	21				22				23				24	교권침해예방교육		25				26	5	38	
5	9	28				29				30	1학기1차고사			1	*1학기1차고사		2	*1학기1차고사			3	5	43	
	10	5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6	대체공휴일			7	교무회의			8	학급회의		9				10	3	46		
	11	12				13				14				15	음주흡연약물 오남용예방교육		16	체육행사			17	5	51	
	12	19				20				21				22	봉사활동		23				24	5	56	
6	13	26				27				28				29	가정폭력예방교육		30				31	5	61	
	14	2				3				4	교무회의			5	진로활동		6	현충일			7	4	65	
	15	9				10				11				12	봉사활동		13	학부모대상 공개수업			14	5	70	
	16	16				17				18				19	학급회의		20				21	5	75	
7	17	23				24				25				26	자살예방교육		27				28	5	80	
	18	30	1학기2차고사		1	1학기2차고사			2	1학기2차고사			3	성폭력예방교육		4				5	5	85		
	19	7				8				9	교무회의 영양교육			10	영양교육 도박예방교육		11				12	5	90	
	20	14				15				16				17	안전체험(2년) 봉사활동		18				19	5	95	
8	21	21				22				23	여름방학식			24				25				26	3	98
	22	28				29				30				31				1				2	0	
	23	4				5				6				7				8				9	0	
	24	11				12				13				14				15	광복절			16	0	
1학기	학년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학기 소계			1	2	3		
	행사일수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2	2	2	2	2	2		
	고사일수	1	1	1	1	1	1	2	2	2	1	1	1	1	1	1	6	6	6	6	6	6		
	수업일수	19	19	19	20	20	20	21	21	21	19	19	19	19	19	19	98	98	98	98	98	98		
	1학기 수업일수: 98				1학기 행사일수: 2				1학기 휴업일수: 1				여름방학: 26											

나. 2학기

월	주	교육 행사														수업일수								
		월			화			수			목			금			토	주계	월계					
8	1	18	여름방학			19	개학식 새학기맞이일			20	교무회의			21	학급회의			22		23	4	4		
	2	25				26				27				28	봉사활동			29		30	5	9		
9	3	1				2	영어듣기평가(1년)			3	영어듣기평가(2년)			4	영어듣기평가(3년) 진로활동			5		6	5	14		
	4	8	학생,학부모 상담주간			9				10	교무회의			11	자살예방교육			12		13	5	19		
	5	15				16				17				18	봉사활동			19		20	5	24		
	6	22				23				24				25	성폭력예방교육			26		27	5	29		
	7	29	2학기1차고사			30	2학기1차고사			1	2학기1차고사			2	봉사활동			3	개천절			4	4	33
	8	6	추석			7	추석연휴			8	대체공휴일			9	한글날			10	재량휴업일			11	0	33
10	9	13				14				15	교무회의			16	학급회의			17		18	5	38		
	10	20	동료장학 주간			21				22				23	장애인식개선교육			24		25	5	43		
	11	27				28				29	2.3테마식현장체험			30	1.현장체험학습 2.3테마식현장체험			31	1.현장체험학습 2.3테마식 현장체험			1	5	48
11	12	3				4				5	교무회의			6	학급회의			7		8	5	53		
	13	10				11				12				13	진로활동			14		15	5	58		
	14	17				18				19				20	봉사활동			21		22	5	63		
	15	24				25				26				27	2학기2차고사			28	2학기2차고사			29	5	68
12	16	1	2학기2차고사			2				3	교무회의			4	학급회의			5		6	5	73		
	17	8				9				10				11	다문화이해교육			12		13	5	78		
	18	15				16	졸업여행(3)			17	영양교육			18	영양교육 봉사활동			19		20	5	83		
	19	22				23				24	사정회 학생회장선거			25	성탄절			26		27	4	87		
	20	29				30	교내축제			31				1	신정			2		3	4	91		
1	21	5				6	종업식 및 졸업식			7				8				9		10	2	93		
	22	12				13				14				15				16		17	0			
	23	19				20				21				22				23		24	0			
	24	26				27				28				29				30		31	0			
2	25	2				3				4				5				6		7	0			
	26	9				10				11				12				13		14	0			
	27	16	설연휴			17	설날			18	설연휴			19				20		21	0			
	28	23				24				25				26				27		28	0			
2학기	학년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학기 소계							
	행사 일수	0	0	0	1	1	2	0	1	1	1	1	1	1	1	1	3	4	5					
	고사 일수	0	2	2	0	1	1	0	1	1	0	1	1	0	1	1	0	6	6					
	수업 일수	19	19	19	20	20	20	20	20	20	17	17	17	18	18	18	94	94	94					
	2학기 수업일수: 93				2학기 행사일수: 4				2학기 휴업일수: 1				겨울·학년말방학: 53											
학년도 총계	학년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학년도 총계							
	행사 일수	0	0	0	1	1	2	0	1	1	1	2	2	2	2	2	5	6	7					
	고사 일수	1	3	3	1	2	2	2	3	3	1	2	2	1	2	2	3	6	6					
	수업 일수	38	38	38	40	40	40	40	40	40	36	36	36	37	37	37	191	191	191					
	1,2학기 수업일수: 191				1,2학기 행사일수: 5·6·7				1,2학기 휴업일수: 2				방학일수: 79											

다. 주요 학사일정 안내

- 개교기념일 : 2025.3.6.(목)
- 교과통합체험학습 : 2025.4.17.(목)
- 체육대회 : 2025.5.16.(금)
- 학부모 공개수업: 2025.6.13.(금)
- 여름방학식 : 2025.7.23.(수), 여름방학 - 2025.7.24.(목) ~ 2025.8.18.(월)(26일간)
- 119안전체험(2학년) : 2025.7.17.(목)
- 재량 휴업일 : 2025.10.10.(금) (1일)
- 현장체험학습(1학년) : 2025.10.30.(목) ~ 2025.10.31.(금)(1박2일)
- 테마식 현장체험학습(2·3학년) : 2025.10.29.(수) ~ 2025.10.31.(금)(2박 3일)
- 종업식·졸업식 : 2026.1.6.(화), 겨울방학 - 2026.1.7.(수) ~ 2026.2.28.(토)(53일간)

라. 정기고사 안내

- 지필평가 일정

고사명	대상학년	고사일		
1학기 1차 지필평가	1,2,3학년	4월 30일(수)	5월 1일(목)	5월 2일(금)
1학기 2차 지필평가	1,2,3학년	6월 30일(월)	7월 1일(화)	7월 2일(수)
2학기 1차 지필평가	2,3학년	9월 29일(월)	9월 30일(화)	10월 1일(수)
2학기 2차 지필평가	2,3학년	11월 27일(목)	11월 28일(금)	12월 1일(월)

※ 1학년 2학기는 자유학기제로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 실시하여 서술식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함

- 영어듣기평가 일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1회	4월 1일(화)	4월 3일(목)	4월 4일(금)
2회	9월 2일(화)	9월 3일(수)	9월 4일(목)

12. 2025학년도 교내상 시상계획

연번	수상명	시행(월)	참가 대상	수상 비율	담당부서	공개방식
1	표창장 (선행/효행/모범/봉사부문)	5월, 11월	전교생	10%	인성인권안전부	담임 및 학생추천
2	가치관발표대회	10월	전교생	10%	도서부	학교 홈페이지
3	독후감쓰기대회	5월	전교생	10%	도서부	학교 홈페이지
4	책광고엽서쓰기 대회	5월	전교생	10%	도서부	학교 홈페이지
5	독서골든벨대회	10월	전교생	10%	도서부	학교 홈페이지
6	영어단어왕 문장왕선발대회	12월	전교생	20%	영어과	학교 홈페이지
7	과학탐구대회	7월	전교생	10%	과학과	학교 홈페이지
8	교과우수상	7, 1월	수강자 (과목별)	5%	연구부	학교 홈페이지
9	용진 자기주도 플래너 우수상	11월	전교생 (학년별)	10%	연구부	학교 홈페이지
10	학교장상	1월	3학년	내신 1위	교무부	학교 홈페이지
11	1년개근상/3년정근상 3년개근상	1월	전교생 3학년	.	교무부	학교 홈페이지
12	표창장(공로상, 기능상,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1월	3학년	.	교무부	학교 홈페이지

IV

학부모 연수 자료

01. 2022 개정교육과정 이해

1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1. 인간상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2. 핵심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3.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함양
 자신의 학습과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협력과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단계별 적용 계획

2024 초 1-2 → 2025 초 3-4 중 1, 고 1 → 2026 초 5-6 중 2, 고 2 → 2027 중 3, 고 3

아이들이 만나는 미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함께 합니다.

2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 진로연계교육** :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의 함양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과와 연계한 진로 활동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
- 교과 교육과정** :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강화 및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
- 고교학점제** :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

3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 관련

-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
 - **교과(군)** :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
 - **선택 교과**: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어, 생활 스페인어, 생활 러시아어, 생활 아랍어, 생활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
 -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
 -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 교과(군)별(3,060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306시간) 배당은 연간 34주,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
 - 총 수업 시간 수(3,366시간)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
 - 정보는 정보 수업 시수와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68시간 이상 편성·운영

※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자료 안내】

- 에듀넷클리어-교육정책-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02. 2025학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1 자유학기제의 개념 및 중점사항

가. 자유학기제의 개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1학년 한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며,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하는 제도

나. 2025학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구분	1학년 중 1학기
운영	자유학기 102시간, 2영역 (주제선택 활동, 진로탐색 활동)
일제식 지필평가	미 실시
평가 결과 기록	교과성취도 미산출 및 교과 및 자유학기 활동 평가 기록
고입 내신성적 반영	미 반영

2 우리 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개요

가.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 및 방법

대상 학기	1학년 2학기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함으로써 배움이 일어나는 학생 참여형 수업 강화 • 협동학습, 토론 수업 및 실험·실습,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수업방법 적용 • 개별학생 맞춤형 지원 활성화 및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형성
자유학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중 102시간을 자유학기 활동으로 전환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희망·관심사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개 영역을 편성하고 학생의 희망으로 프로그램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선택, 진로탐색 활동 1) 주제선택 활동: 교과 심화 및 확장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로탐색 활동: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기초를 마련
평가 및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식 지필평가 미 실시,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 실시 • 교과성취도 미산출, 이수 여부만 성취도란에 'P'로 입력 • 교과 및 자유학기 활동 평가 결과 기록 <p>- (교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체육·예술 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문장으로 기록</p> <p>- (자유학기 활동)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생의 활동 과정 및 참여 태도, 활동 후 성장 정도 등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문장으로 기록</p>

나. 자유학기제 활동 내용 및 운영 계획

자유학기 활동	진로탐색	주제선택
	2학기	2학기
주당 운영시수	1	5
총 운영 프로그램 수	1	5
개인위탁 프로그램 수	1	2

활동	프로그램명	비고
주제선택(국어)	마음의 서랍(시쓰기 활동)	
주제선택(영어)	fun fun 영어	
주제선택(수학)	신나는 수학체험	
주제선택(과학)	창의코딩	
주제선택(사회)	자존감 프로젝트	
진로탐색(기술가정)	나 탐색하기(목공체험)	

【자유학기제 학부모대상 이해자료 안내】

- 에듀넷티-클리어홈페이지-교육정책
-자유학기제



0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안내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가.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15일)
- 나.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인정
- ※ 위기경보 수준은 '23.6.1.일자 이후 「심각」 → 「경계」로 하향 조정하여 대응 중
 -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다. 방법: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학교에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 1일 외에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 가능.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봄.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함.

2 출석 인정 결석

-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바.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기존 1에서 변경)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

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자.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차. 학교장은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위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로 보아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함.

※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병결에 준하여 인정 비율은 80%로 한다.

3 출석 인정 외 결석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나. 미인정 결석

-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수 초과, 태만, 가출, 고의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관련 기관 출석·체포·도파·구속·교도소 수감 등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 기타결석(*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1교시 시작 후 0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50 이후)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같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04. 학생 봉사활동 운영 안내

1 학생 봉사활동 실적인정 유의사항

가.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인정기준(정규수업과 봉사활동 시간의 합은 최대 8시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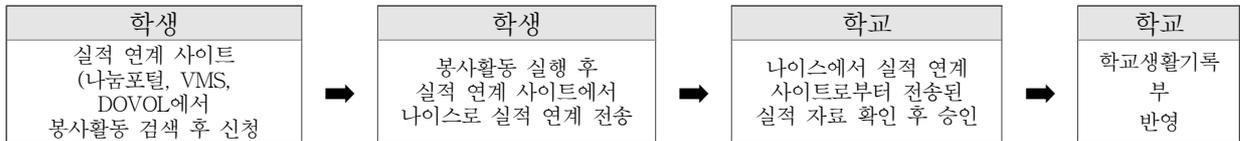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평일 (7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등)
인정시간	2시간	1시간	8시간

나. 학생 봉사활동 인정 관련 주의사항

- 1) 단순 봉사활동 관련 영상물 시청, 지역축제·건기 대회·자전거 타기 대회 등의 단순 참여 불인정
- 2)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 3) 해외 봉사활동 관련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생활기록부 어떤 곳에도 기재 불가)
- 4)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는 인정 불가

다.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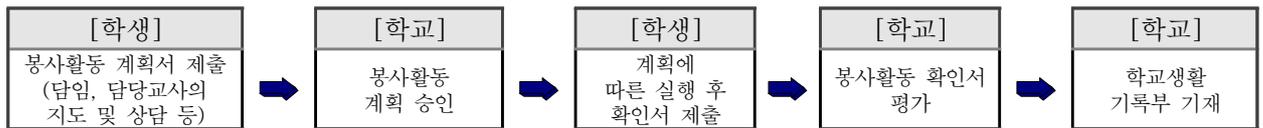
- 1)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교로 봉사활동실적을 연계하는 “나이스 실적 연계전송”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서만 가능, 다른 사이트에서는 1365로 전송만 가능함. 1365 자원봉사포털은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편리함.

- 2) 1365자원봉사활동,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2 봉사활동 인정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자원봉사센터(1365: 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VMS: 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Dovol: 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내용 등을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학교 간 봉사활동 운영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이상을 권장함.

0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계획

1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중학교 생활기록부기재요령
 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추진 경과

-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14.3.)
 - ※ 초·중·고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선행 출제 금지, 중·고교 입학전형 및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평가 금지
- [시행 2014.9.12.] 「법률 제12395호, 2014.3.11., 제정」
- [시행 2019.3.26.] 「법률 제16300호, 2019.3.26., 일부개정」
- [시행 2022.7.21.] 「법률 제18298호, 2021.7.20., 타법개정」

□ 용어 의미

용어	주체	의미
선행교육	학교	교육관련기관이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선행출제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을 의미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선행학습	학생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

□ 적용 예외 해당사항

-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 기관의 영재교육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 국가, 시도, 학교 교육과정상 체육, 예술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교과 (군), 전문 교과
-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참고자료1] 선행학습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참고자료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선행교육 관련 주요 내용**

제5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 29.>

□ 법의 적용

규제 유형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 편성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운영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교내대회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평가

■ 과거와의 단절이 더 나은 삶을 부른다.

대개 배움의 열쇠는 애쓰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명료하게 생각하는 데 있다.
 즉 당신이 늘 하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배움
 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방식대로 하면 늘 과거와 같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

- 시어도어 다이먼

** 행복한 경영이야기 / <https://www.happyceo.or.kr> 중에서...

"성공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06. 청렴 연수 - 청렴은 세상을 더 밝게 합니다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연수



1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2 불법찬조금 유형 및 사례

- 각 학급별 대표 학부모들이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한 찬조금품을 학예발표회,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여 야간자율 학습지도, 교직원 선물·회식 등의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생간부 어머니 또는 어머니회(자모회 등)등이 학교 기자재 및 교재·교구 확충, 교실물품 구입, 시설비 확보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지원하는 사례
- 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의 교육활동 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각종 경비를 부담하는 사례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차량운영비,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집행 (지도자 인건비, 수당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은 조성 불가)
- 학부모회에서 일인당 회비를 모금하여 찬조금을 조성하고, 이를 별도계좌로 관리하면서 학생 도시락 및 간식을 제공한 사례
- 학교(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회 조성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학부모회장 개인명의 별도계좌에 모금하였으며, 학부모회장이 직접 지급 또는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집행한 사례
-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2) 유지·관리에 의뢰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비용은 예외)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
-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3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 → 신고센터 → 감사분야신고]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1 청탁금지법은 왜 필요한가요?

◆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2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는 무엇인가요?



-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선물(케이크 등)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학부모)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학부모님이 선생님과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교감 선생님께 선물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 청탁금지법 허용사례는 무엇인가요?



-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꽃)을 드리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입니다.
-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 등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학교의 선생님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이 허용됩니다. (동생이 이전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불가능)



1 도입 배경

- 유해식품 제조유통, 폐기물 무단방출 및 건설현장 부실시공 등 각종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 및 신뢰 훼손 등 심각한 사회적 손실과 비용을 야기

- 행정·감독기관의 단속·적발만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공익침해의 예방·통제를 위해서는 공익침해를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

- 2011. 9. 30.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는 기반 조성

※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80개 법률 위반 신고를 공익신고로 처리

2 신고대상 공익침해 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등 총 180개 법률의 벌칙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

☞ 「식품위생법」 제9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양곡매매업자 등이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과대의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 「양곡관리법」 제21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3 신고 접수 기관

- 권익위, 공익침해행위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관련 공공단체, 기업 등

4 보호 및 지원사항

-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책임감면 등

- 과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시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결정

- 벌금·과태료 부과 등 수입 발생 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07.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자료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19조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

「교원지위법」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행위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Q&A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유형의 예

구분	질문	답변
폭행	실제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 위협적인 행동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실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	교원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은 어떤 문제가 되나요?	"학교를 그만두게 하겠다.", "죽여버린다." 등의 위협적인 발언은 교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협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예 훼손	교원에 대한 허위 제보나 기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원에 대한 허위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여 보도되게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사는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욕	교사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나요?	정당한 의견 제시는 가능하지만, 욕설이나 인격 모독적인 발언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반복적 요구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교원에게 불안감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교원이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업 방식이나 평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나요?	건설적인 의견 제시는 가능하지만, "시험범위를 줄여라.", "체육수업 대신 자습을 시켜라."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08. 환경 연수 -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환경급식 홍보영상 안내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2025 저탄소 환경급식 정책을 홍보하고 채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 거부감 감소, 자발적 섭취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저탄소 환경급식 홍보 영상]을 안내하오니, 학생 식생활 교육(지도) 및 가정연계 지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상내용: [\[저탄소 환경급식 안내 영상\] \(홍보자료실 > 전북교육희망의대전환TV | 전북교육소식 \(jbe.go.kr\) 전북교육청 저탄소환경급식\(플버전\) - YouTube\)](#)

- 푸드마일리지 적은 우리고장 식재료 활용하기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저탄소 식재료(채소, 과일 등) 음식 섭취하기

09.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1.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안)

구분 학교유형	전기고			후기고			
	특수목적고(4개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4개교]	특수목적고(2개교) 특성화고(전문25개교, 대안4개교) 일반고(전문2개교, 예체4개교) [37개교]		특수목적고(1개교) 자율형사립고(1개교) [2개교]	비평준화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53개교]	평준화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39개교]	
내신산출기준일	'25. 9. 30.(화)	'25. 10. 31.(금)		'25. 12. 11.(목)			
내신산출완료일	'25. 10. 14.(화)	'25. 11. 6.(목)		'25. 12. 15.(월)			
원서교부·접수	'25.10.20.(월)-10.23.(목) 17:00까지	특별전형 (전원계열)	'25.11.7.(금)- 11.11.(화) 17:00까지	일반전형	'25.11.19.(수)- 11.21.(금) 17:00까지	상산고: '25.12.4.(목)-12.9.(화) 외국어고: '25.12.15.(월)-12.17.(수) 일반고: '25.12.17.(수)-12.19.(금)	
전형기간 (전형일)	'25.10.28.(화)-11.3.(월)		'25.11.14.(금)		'25.11.24.(월)- 11.26.(수)	자기주도 학습전형	상산고: '25.12.22.(월)~12.23.(화) 전북외고: '25.12.29.(월)
합격자 발표	'25.11.4.(화) 10:00		'25.11.17.(월) 10:00		'25.11.28.(금) 10:00	학교별 일정	(비)'25.12.31.(수)10:00 (평)'26.1.9.(금)10:00 상산고'25.12.30.(화) 전북외고 12.31.(수)
학교배정발표					평준화일반고 배정 '26.1.16.(금) 14:00		
등록기간	2026. 1. 19.(월)-1. 21.(수) 17:00까지 [전·후기고 공통 정시모집 등록기간]						
추가 모집	원서접수	2026. 2. 2.(월)-2. 3.(화) 17:00					
	전형일	2026. 2. 5.(목)-2. 6.(금)					
	합격자발표	2026. 2. 10.(화) 10:00					
	등록기간	2026. 2. 12.(목)-2. 13.(금) 17:00					
수시 추가	원서접수	2026. 2. 19.(목)-2026. 5. 22.(금)					
	전형 및 등록기간	수시 추가모집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은 기간 내 수시 (다만, 입학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특기사항	* 전북과학고의 전형은 8월 말부터 / * 평준화 일반고·자공고는 추가모집·수시추가모집 없음						
전형군별 학교명단	특수목적고(4) (산업수요 맞춤형고) -군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한국경마축산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특수목적고(2) 전북과학고,전북체육고 특성화고(29) -전문계열(25) 전주생명과학고,전주공고,전주상업정보고,완산 여고,군산여상고,이리공고,원광보건고,진경여고,정 읍제일고,칠보고,글로벌학산고,남원용성고,남원 제일고,덕암정보고,수소에너지고,한국게임과학 고,한국한방고,한국기술부사관고,전북유니텍고, 전북팻고,한국치과과학고,강호향공고,전북베이 커리고,졸포자동차공고,전북인공지능고 -대안계열(4) 고산고,세인고,푸른꿈고,자평선고 일반고 전문계열(2) 한국전통문화고,함열여고 일반고 예체계열(4) 한국전통문화고,남원국악예술고,전주예술고, 한국마사고 ※ 밑줄: 2개 전형 실시 고교	특수목적고(1) 전북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1) 상산고	o 평준화 (일반고·자공고)(39) 전주(23):전북사대부고,양현고,천라 고,전주고,전주솔밭고,전주여고,전주 제일고,동암고,완산고,우석고,유일여 고,전북여고,전일고,전주근영여고,전 주기전여고,전주사대부고,전주성심 여고,전주영성고,전주신흥고,전주중 암여고,전주한일고,전주해성고,호남 제일고 군산(8): 군산고,군산여고,군산동고,군 산상일고,군산제일고,군산영광여고,군 산중앙고,군산중앙여고 익산(8): 이리고,이리여고,남성고,원 광고,원광여고,이리남성여고,이리여 고,전북제일고 o 비평준화(일반고·자공고)(53) 군산(1):한들고 익산(5):성일고,익산고,여산고,함열고 함열여고 정읍(10):배정고,서영고,산태인고, 왕산고,인성고,정읍고,정읍여고,정주고,태 인고,호남고 남원(5):남원고,남원여고,남원서진여고, 성원고,인월고 김제(7):김제고,김제서고,김제여고, 금산고,덕암고,만경고,만경여고 완주(2):완주고,한별고 진안(3):마령고,안천고, 진안제일고 무주(4):무주고,설천고,무풍고, 안성고 장수(3):백화고,산서고,장수고 임실(1):임실고 순창(3):순창제일고,동계고, 순창고 고창(4):고창고,고창북고, 자유고,해리고 부안(5):백산고,서림고,부안고,부안여고, 위도고			
전형136개교(133개교)	4개교	37개교(중복 1개교 포함)		2개교	92개교(중복 1개교 포함)		

가. 내신성적 반영 항목

구분	항목	배점	반영비율	비고	
교과	일반교과	1-2학년	90점	30%	
		3학년	90점	30%	
	체육·예술교과	전 학년	60점	20%	
	소계	240점	80%		
비교과	출결상황	30점	10%	학년별 10점	
	봉사활동상황	15점	5%	전 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15점	5%	학년별 5점 (기본점수 3점)	
	소계	60점	20%		
총계		300점	100%		

※ 자유학기제 등으로 성취도 환산이 가능한 성적이 없는 학기의 교과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 전기고 내신성적산출: 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수행평가 제외)

※ 후기고 내신성적산출: 3학년 2학기 1, 2차 지필고사+수행평가

교과 성적 산출 공식

구분	학년	교과 성적 산출 공식	배점
일반 교과	1-2	$\left(\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 \frac{\text{이수과목 원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0.01 \right) \times 15$	90
	3	$\left(\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 \frac{\text{이수과목 원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0.01 \right) \times 15$	90
	소계		180
체육·예술 교과	전 학년	$\frac{\text{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text{이수과목 수}} \times 12$	60
합계			240

※ 이수과목이란 성취평가제에 의한 성취도 환산이 가능한 과목을 말한다.

※ 교과의 성취도 환산점수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교과			체육·예술교과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환산점수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환산점수
90% 이상	A	5	80% 이상	A	5
80% 이상~90% 미만	B	4	60% 이상~80% 미만	B	4
70% 이상~80% 미만	C	3	60% 미만	C	3
60% 이상~70% 미만	D	2			
60% 미만	E	1			

※ 졸업생의 경우, 세부 시행 지침(3./ 마./ 2/))에 따라 적용하되, 부득이 본 산출공식에 따라 산출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수, 우수(체육·예술교과): A, - 우, 보통(체육·예술교과): B,

- 미, 미흡(체육·예술교과): C, - 양: D, - 가: E

나. 출결상황

1) 출결상황 산출

출결상황 산출은 결석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질병 및 기타(학교장이 인정한 사유)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결석일수의 산정 기준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미인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산출

미인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산출은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3회 미만은 0일로 계산).

3) 점수 산출

미인정 결석일수에 따른 출결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각 학년별로 산출하며 총 30점 만점을 적용한다.

□ 학년별 출결상황 내신점수 산출표 □

미인정 결석일수	출결상황 점수
0일	10점
1 - 3일	9점
4 - 7일	8점
8 - 11일	7점
12 - 15일	6점
16 - 19일	5점
20일 이상	4점

4) 해외 귀국자 및 북한이탈주민, 조기졸업(예정)자 등 특별한 사유로 출결상황 산출이 불가능한 학년은 10점을 부여한다.

다. 봉사활동상황

1) 봉사활동상황 점수는 총 15점이며, 부여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1회의 최저 봉사활동 시간은 1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봉사활동상황의 점수는 3개 학년의 봉사활동 시간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내신점수를 부여한다.

□ 봉사활동상황 30시간 기준 내신점수 산출표 □

시간	30시간 이상	29-28	27-26	25-24	23-22	21-20	19-18	17-16	15-14	13-12	11-10	9-8	7-6	5시간 이하
점수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2) **지체장애인**으로 봉사활동이 불가능한 자(종합병원 진단서 등 증명서 첨부)는 15점을 부여한다.

3) **해외 귀국자 및 북한이탈주민, 조기졸업(예정)자 등은 (재)취학·편입 일자에 따라 아래 기준을 따른다.**

대상	부여기준
국내 정규학교 2025. 1. 1.이후 (재)취학·편입자	봉사활동상황 점수 15점 부여
국내 정규학교 2024. 12. 31.이전 (재)취학·편입자	봉사활동상황 점수표 30시간 기준으로 부여

4) 타 시·도 전입생의 경우 전출교의 봉사활동 시간과 전입교의 봉사활동 시간을 합산하여 3개 학년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내신점수를 부여한다(타 시·도의 봉사활동상황 점수 입력 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5) 기타 사항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점수의 총점은 15점(학년 당 5점)으로 한다.
- 2) 학년 당 점수 5점 중 3점은 기본점수이며, 2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각 부여 대상별 점수는 0.5점으로 한다. (단, 조기졸업(예정)자의 경우 기본점수(9점)를 부여하고, 학년 당 2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 3)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으로 내신점수를 산출한다.
 - 가) 행동 덕목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는 표창별 점수를 부여한다. 단, 같은 **학년 내** 표창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인정한다.
 - 예) 1학년 때 봉사상과 선행상을 받은 경우 각 0.5점씩 1점을 부여하고, 2학년 때 모범상을 두 번 받은 경우는 하나만 인정하여 0.5점을 부여함
 - 나)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유공자점수는 **학년별** 항목당 하나만 인정한다.
 - 예) 3학년 때 1학기 반장과 학생회장을 한 경우 자율활동 항목 유공자로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함
 - ▣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유공은 한 학기 이상의 경력만 인정함
 - ▣ 3학년 2학기 유공자의 경우 내신 산출 기준일까지를 한 학기로 산정함
 - 다) 우수자 점수는 **학년별** 우수자 항목당 하나만 인정한다.
 - 예) 3학년 때 자율활동 항목 우수자로 표창을 두 번 받은 경우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함
- 4) 가산점 부여 항목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다.
- 5)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내신성적 산출 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가산점 부여 항목 예시안 (점수는 0.5점 기준) □

순	항 목	유형	기 준	점 수
1	학교장 표창	행동 덕목	모범상,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예절상 등의 인성과 관련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표창별 0.5점
2	자율 활동	유공자	학급 정·부반장, 학생회 임원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항목별 유공자 0.5점 및 항목별 우수자 0.5점
		우수자	교과와 관련 없는 각종 자율활동으로 인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3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유공자	동아리활동반 정·부반장(기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항목별 우수자 0.5점
		우수자	각종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4	진로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우수자	각종 진로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0.5점

* ‘동아리 활동’ 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기록되는 정규 교육과정 내 동아리 활동만을 의미함.

‘자율동아리’ 는 동아리명과 동아리 소개만 기록 가능하므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

※ 위 표를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 항목과 세부사항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학생, 학부모에게 4월 중에 반드시 공지해야 함.

10. 인성인권안전부 운영 계획

1 연간 계획

구분	추진내용	시기
연간 계획 수립	· 기획 및 업무 총괄 · 교내 생활 지도 · 교외 생활 지도 · 상담	3월
규정 정비 및 위원회 조직	· 학교생활교육위원회 ·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3월
교내 생활 지도	· 용의 복장, 인사 예절, 지각, 휴대전화, 외출 등 · 금연 지도 및 흡연예방강의 실시 · 교내 순찰 · 선행상, 효행상, 모범상, 봉사상 표창	연중 연중(2회) 수시 5월/11월
교통안전지도	· 등교 시 교통안전 지도 활동 실시	연중 수시
교외생활지도	· 교통질서(신호등, 횡단보도) · 자전거 통학(교내 자전거보관대 이용) · 교외 순찰 · 휴가 중 합동 교외 생활 지도	연중 수시 8월
자치 활동	· 학급회 조직 · 학생회(대의원회) 조직 및 운영 · 학생회장단 선거	3월 3월 12월
학교폭력 예방활동	· '학교폭력추방의 날'행사 실시 · 학교폭력실태 설문 조사 · 피해자 상담 · 캠페인, 강연 등의 행사 · '친구사랑의 날'운영	9월 2회 수시 4회 11월
교육	·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실시 ·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실시 · 자살 예방 교육 실시 ·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3,5,9,11월 6월11월 5월 5월,12월 6월, 11월
상담	· 개별 상담 · 결손·부적응학생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연중

2 운영 방침

- 가. 학교폭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 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스스로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학풍을 조성한다.
- 다. 학생들이 다양한 삶의 현장과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제공한다.
- 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 문화를 조성한다.

제3장 학생 생활

제23조【기본행동】

- ① 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 ②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 ⑥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⑦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제24조【수업 태도】

- ①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 ②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 ④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 ⑤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 ⑥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 활동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25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 ① 학교의 장,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 ② 휴식 시간(식사시간 포함)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여가 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의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26조【시설이용과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 ②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 ③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 ④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27조【개인 소유물】

- ① 다른 학생과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28조【복장과 용모】

- ① 학교에서 지정하는 교복 및 체육복을 착용하고, 교복은 변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운동화를 착용하고 등하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가 많이 내려 신발 속까지 젖을 수 있는 날은 슬리퍼를 착용할 수 있으나 실내용과 구분되어야 한다.
- ③ 가벼운 화장은 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업시간에 화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9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 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③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호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가. 소지 금지 물품

-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 5) 인권침해, 혐오 표현,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 8)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나.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 3) 수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

제30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8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287조 제7,8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과 흡입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③ 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

속하게 한다.

④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31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 제27조와 제28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교육활동 시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방법 및 기한은 [별표1]과 같다.

제32조【전자기기 사용】

①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자기기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

②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원은 수업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 관리할 수 있다.

④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제32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④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33조【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제34조【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적 상담과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행동개선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5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 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 학부모 통보와 상담
 6.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 지원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6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4 징계의 기준

전북학생인권 조례 26조 1항의 절차 위배되지 않게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정한다.

구분	항	행위 내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예절	1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 학생				
	2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3	타인의 소유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절도를 행한 학생				
	4	학교의 기물 및 공공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5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6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7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8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를 운행한 학생				
	9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법에 저촉되어 선도 위임된 학생				
	10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1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부당한 상거래를 통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13	도박을 한 학생				
	14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15	불건전한 서적 및 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학생				
수업	15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또는 시험을 거부한 학생				
	16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17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고의로 방해한 학생				
	18	백지 동맹을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19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훔친 학생				
약물	20	교내외에서 흡연 또는 음주한 학생				
	21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기타	30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31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32	소지 및 사용 불가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33	미인정 결석, 결과, 외출, 조퇴, 지각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34	학생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 행위 내용에 대한 징계 수준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 재학 중 책임행동 실시 후 동일한 사안의 경우 책임행동 부과 횟수의 누적에 따라 가중하여 책임행동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학교폭력 예방교육

1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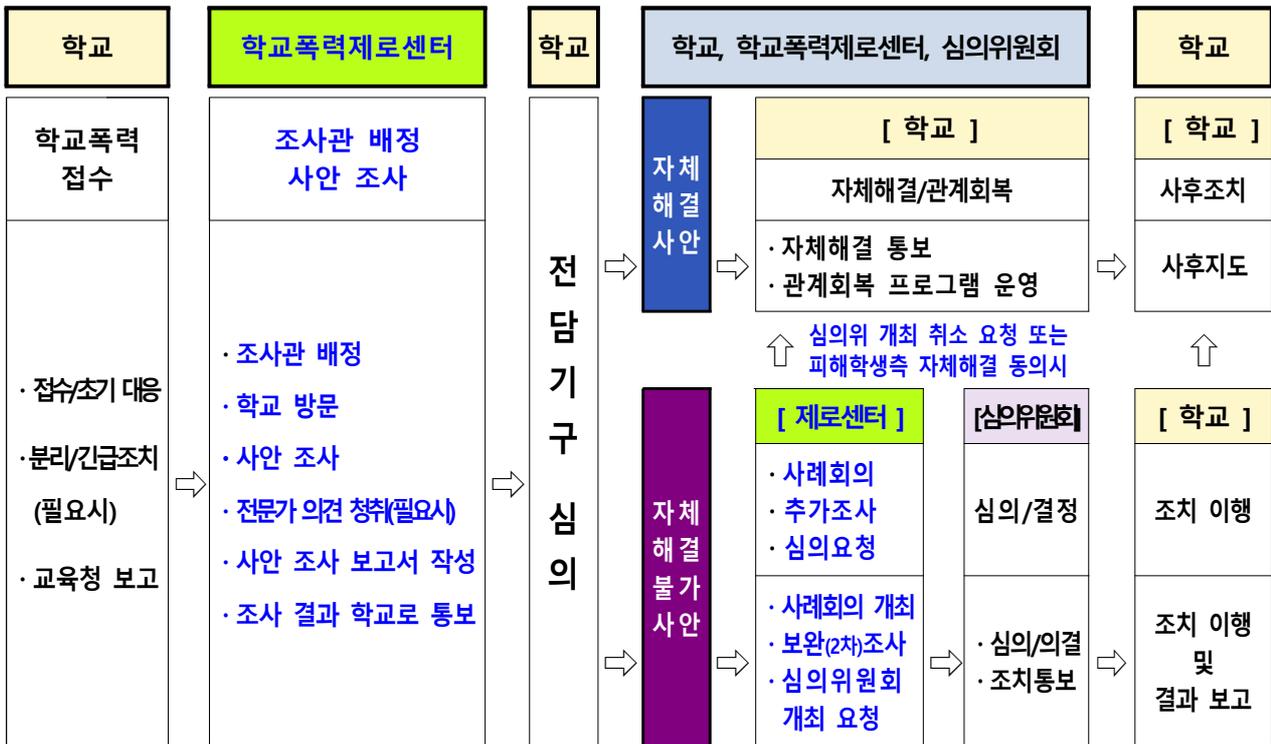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요

학년도	사안 접수 및 보고	사안 조사	전담기구 심의	사례회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이행 및 결과보고
2025	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학생생활지원센터	학교

◆ 사안 처리 흐름도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가. 내 자녀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나.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 관계**를 파악합니다.
- 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존중, 역지사지, 준법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 라. 자녀에게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에게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합니다.
- 마. 자녀에게 **모범적인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자녀에게 친구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하고자 할 때, 잘못된 일임을 친구에게 알리도록 지도하고, 잘못된 친구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친구 간의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4 학교폭력 피해를 알았을 때 대처요령

- 가. 자녀가 폭력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께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나. 폭력피해가 우려되는 자녀에게는 동반자를 만들어 주고, 등하교 시 **가급적 큰길**을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 **부모님과 동행**하도록 합니다.
- 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와 협의하여 **공동지도**하도록 합니다.
- 라.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바로 부모님, 선생님께 알리도록 자녀에게 지도하며, 그것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과 같음**을 알려줍니다.
- 마.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생활지도 및 태도 개선을 위해 힘씁니다.

5 학교폭력 신고 방법

가. 교내 신고 방법

- (직접 신고·상담)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거나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
- (신고함) 교내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안내(신고학생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위치 고려)
-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 부여 및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 실시
- (이메일) 담임교사의 메일,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메일 등
-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나. 교외 신고 방법

-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 국번 없이 117 및 117센터에 방문 신고·상담
- (경찰청)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범죄 신고 11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12.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1 아동학대의 개념

◆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제1조)

※ 가정폭력 피해자가 18세 이상의 경우는 가정폭력 관련법이 적용되고,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법을 우선 적용함.

◆ ‘아동학대’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범죄’란?(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각 목)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 ▶ (형법)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 (아동복지법)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좁은 개념(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내용

가.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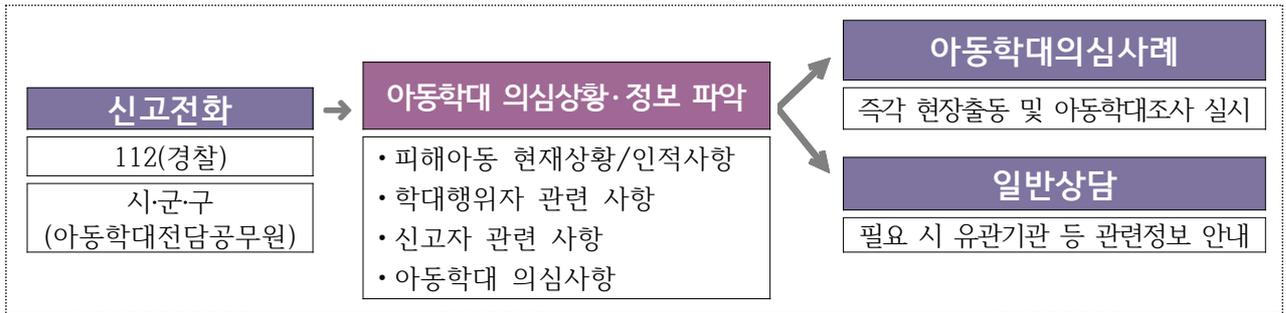
나.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다.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라. (방임 및 유기)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아동학대 신고

가.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흐름도



나. 아동학대 신고자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비공개 의무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라.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기관

- 국번 없이 112(전화, 문자)
- 시·도,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
- 모바일앱(아이지킴콜 앱)
- 보건복지콜센터 129-6번(아동학대 상담)
-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찰청으로 신고된 사안(교사 대상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기관의 요청 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절차 시행

-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변호사 등이 학교를 방문하여 사안 확인
- (시교육청) 교사 대상 아동학대 사안 관련 교육감 의견서(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작성 후, 수사기관에 제출

4 징계권 폐지 안내

◆ 징계권이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민법 제915조)

◆ 징계권 폐지

- 징계권은 2021년 1월 26일에 폐지되었습니다.
- ※ 아동은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13. 자녀를 위한 인권·인성교육

1. 인권의 의미

- 국적, 종교, 시민권, 배우자의 유무, 직업, 수입 또는 다른 어떤 사회적 종교적 특성,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human rights)이다.

"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

- 세계인권선언 제 1조

2.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부모님의 실천

1. 자녀의 사생활 존중하기 ○ 자녀 일기장 몰래보지 않기 ○ 자녀 휴대전화 몰래보지 않기 ○ 자녀 책상, 가방 뒤지지 않기 ○ 자녀 우편물, 전자우편 몰래보지 않기	2. 안돼!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 긍정적이고 권유형의 표현으로 대화하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겠니?"
3. 자녀의 인격 존중하기 ○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기	4. 자녀의 의견과 선택의 권리 존중하기 ○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기

3. 자녀 존중 십계명

1.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한다.
2. 가정 안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3.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는 단지 조언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4. 형제자매간에 성별, 나이, 학업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자녀를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6.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일방적인 체벌보다는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7. 교육적 체벌도 가급적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지 부모 자신이 먼저 성찰해야 한다. 자녀를 때리지 않고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8. 자녀를 흥분한 상태에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9.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생각과 생활태도를 지니도록 늘 가르쳐야 한다.
10.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되, 자녀의 사생활도 보호해주어야 한다.

<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부모님의 실천 >

비난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욕하는 걸 배우고, 조롱 속에서 자란 어린이는 부끄러움을 배우고, 책망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죄의식을 배운다.

용기를 얻으며 자란 어린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공정함 속에 자란 어린이는 정의감을 배우고, 인정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그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

1. 자녀의 사생활 존중하기

- 자녀 일기장 몰래보지 않기
- 자녀 휴대전화 몰래보지 않기
- 자녀 책상, 가방 뒤지지 않기
- 자녀 우편물, 전자우편 몰래 보지 않기

2. 안돼!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 긍정적이고 권유형의 표현으로 대화하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겠니?”

3. 자녀의 인격 존중하기

-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기 : 야, 임마, 이 새끼’ 등 감정적 표현 사용하지 않기
- 자녀의 말 끊지 않기

4. 자녀의 의견과 선택의 권리 존중하기

-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기

◆ 자녀 존중 십계명 ◆

1.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한다.
2. 가정 안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3.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는 단지 조언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4. 형제자매간에 성별, 나이, 학업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자녀를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6.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일방적인 체벌보다는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7. 교육적 체벌도 가급적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지 부모 자신이 먼저 성찰해야 한다. 자녀를 때리지 않고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8. 자녀를 흥분한 상태에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9.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생각과 생활태도를 지니도록 늘 가르쳐야 한다.
10.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되, 자녀의 사생활도 보호해주어야 한다.

* 사랑하는 자녀를 보는 눈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 매번 승리하면 교만해진다.

안팎이 모두 안녕하오.
평안할 때 위험을 잊지 말아야 하고,
잘 다스려질 때 화란을 잊지 말아야 하오.
비록 오늘 별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장차 어찌해야 한결같이 안녕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오.
- 당태종

14. 도박 예방 교육

1 학부모님, 도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 도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도박 행동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의 접근성이 높아져, SNS를 통한 불법 도박광고 및 홍보문자가 무분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의 도박문제를 예방할 백신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친구들과 돈 거래가 잦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선물 등)을 자주 사주고, 짜증이나 신경질을 내는 등 정서적 문제가 있는지 가정 내에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박을 하게 되는 동기



금전동기

쉽게 큰 돈을 따고 싶거나 잃은 돈을 만회하고 싶은 욕구



흥분동기

스릴과 흥분, 짜릿함,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욕구



회피동기

현실 문제의 압박감, 우울감, 스트레스를 잊고 싶은 욕구



사교동기

직장 동료나 주위 친구들과 놀이 및 친목의 욕구



유희동기

가벼운 즐거움과 여가를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욕구

2 우리 아이들이 도박문제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 도박행동 자가점검 선별척도를 통해 아이들의 도박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9개 문항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cgp.or.kr/> 접속 또는 자가점검 바로가기☞



우리 아이들의 도박행동 자가점검 후 점수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비문제 수준 (0~1점)

도박문제는 없어요.
만약 도박을 자주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위험 수준 (2~5점)

지금이라도 중단해요.
문제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문제 수준 (6점 이상)

도박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도박문제 전문상담 ☎1336 전화해요.



헬프라인 1336은 전국 단위의 도박문제 전화상담 번호 (연중무휴)입니다.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박자 및 가족·지인들은 국번없이 1336으로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영상으로 손쉽게,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 내 도박문제 예방교육”

 <p>도박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p> <p>도박중독 뇌가 망가지는 이유</p>	 <p>도박엔! 청소년B</p> <p>원들이랑 바카라, 포워블, 룰렛 했었어요</p> <p>청소년 도박 언제는 잡힌다</p>	 <p>도박엔! 금융교육 전문가</p> <p>청소년도박, 소액 빌리고 이자폭탄 맞는다?</p>
		

“자녀의 도박문제, SOS! 알리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원

청소년 도박문제

S TOP

O PEN

S TART

멈추고,
문제를 알려,
상담 받자!



괜찮아
☎1336으로 상담받자!

도박문제 상담채널

<p>전화상담</p>  <p>헬프라인 1336 (국번없음, 무료)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원</p>	<p>채팅상담</p>  <p>넷라인 (netline.kcgp.or.kr)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원</p>	<p>문자상담</p>  <p>#1336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원</p>	<p>키키오록상담</p>  <p>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원 친구추가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원</p>
--	--	--	--

15. 마약류 및 흡연 예방 교육

1 흡연 예방 교육

가. 간접흡연

- 1)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옆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상태
- 2)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함.
- 3)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 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 붙어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정의함.
- 4)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흡연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 역시 흡연의 피해가 나타남.

나. 담배, 어떤 형태로든 건강에 해롭다

- 1)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니코틴에 더 민감하고 의존성도 빨리 생기며, 청소년의 뇌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 최근 담배회사들이 내세우는 ‘위험 감소’, ‘냄새 없는’, ‘연기 없는’, ‘깨끗한 대안’ 등의 담배 제품은 교묘한 담배 산업전략의 예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
- 3)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 시기의 흡연을 적극 차단하여야 함.

다. 담배 없는 학교를 위한 가정의 역할

- 1) 학생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부모님들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가족 내 흡연자가 있다면 자녀가 담배를 경험할 위험성이 매우 높음.
- 2) 금연은 의지가 중요하지만, 의지만으로 금연에 이르는 흡연자는 3%에 불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연지원서비스를 확인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세요. (☎ 1544-9030)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세요.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보건소 검색)

※ 참고 사항

- 학교 내 금연 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의 주변 30미터까지 금연구역 확대 적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24.8.17. 시행)으로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2 마약 예방 교육

가. 청소년 마약류 사용자 증가

- 1)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
- 2) 마약류를 거래할 때 특정 장소나 사람을 통했던 과거와 달리 인터넷, SNS로 쉽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변화
- 3) 마약류와 관련된 자극적 용어와 영상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노출되면서 호기심으로 접근해 보는 사례 증가

나. 마약류로 인한 피해 및 범죄 연루 위험성

- 1) 성장기 청소년들은 마약류에 민감하게 반응해 성인보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더 크게 발생 (기억력 및 사고능력 저하, 공격적 성향, 거짓말, 발달장애 등)
- 2) 청소년기는 또래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범죄 연루 위험성도 증가
- 3)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받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4) 간단한 일인데, 무료 관광이나 과도한 금품 등을 제안한다면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5) 낯선 사람이 제공하는 음료, 물, 사탕, 과자 등 모든 음식을 절대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 철저한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 1) 마약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 2) 자녀들이 마약류에 노출되거나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교육기관



☑ 한국마약퇴치본부

: 1899-0893

- 전국 13개 지역 시도지부 방문, 편지, 메일, 전화 상담 가능
- 의료기관 치료 연계

학생 마약류 예방 교육자료



☑ 학생건강정보센터

: <https://schoolhealth.kr>

입원, 외래 치료 및 상담기관



☑ 지역사회 내 치료보호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약범죄 신고기관

☑ 경찰: 112

☑ 검찰: 1301

☑ 관세청: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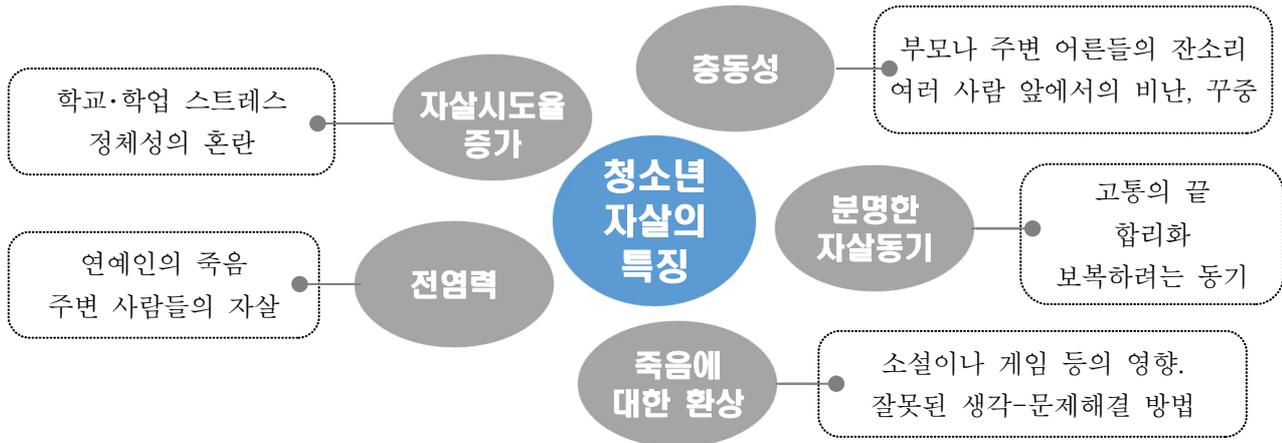
※ 상담, 교육 및 치료 기관에서 상담 시 모든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인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choolhealth.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사회정서교육)

1 청소년 자살의 특징



2 자살징후 체크리스트

- 평소와 달리 숙제를 잘 안 해 온다.
- 수업시간에 자주 졸거나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 무단 지각, 조퇴, 결석이 많다.
-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 표정이 어둡고 울적해 보인다.
- 갑자기 살이 너무 빠져 보이거나 썩 보인다.
- 위생 및 청결 상태가 좋지 않다.
-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비행 행동을 한다.
- 최근 가정문제(부모 이혼, 사별, 경제적 문제 등) 또는 학교 문제(학교 폭력, 따돌림)를 경험했다.
- 최근 친구, 지인 등의 자살 사망을 경험했다.*
- 일기, 노트, SNS 등에 슬픈(죽음 관련)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 '죽고 싶다',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등 자살과 관련된 말을 한다.*
- 자해,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

-
- 최근 3개월 이내에 3개 이상 보이는 경우 담당 교사에게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함.
 - '*'항목은 1개 일지라도 교내 담당 교사에게 연계

생명의 전화

www.lifeline.or.kr

☎ **1588-9191**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88**

「다 들어줄 개」 문자상담

☎ **1661-5004**

3 청소년 자살 방지를 위한 노력 및 방법

가. 자살예방 대처방법(가정)

- 자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자살에 대한 생각, 시도, 방법 등).
- 자살에 대한 생각과 삶을 지속할 이유 등 자녀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 논쟁이나 비판이나 충고, 설교, 조언은 하지 마세요.
- 부모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세요.
- 말과 몸짓으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세요(힘든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이나 몸은 자녀를 향해 주세요).
-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주세요.
- 자살 이외의 어려움을 해결할 여러 대안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으세요.
- 곁에 머물러 주세요(자살은 충동적이므로 잠깐 고개를 돌린 순간에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 도움을 요청하세요(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청소년 생명존중(자살 예방) 7계명

- 진심어린 사랑으로 학생을 대한다.
- 학생의 장점과 강점을 부각시킨다.
- 학생과의 면담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 학생의 말을 잘 경청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한다.
- 학생지도 시 자존심 손상이나 인격적 모욕감이 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학생의 친구들에게 조력을 구한다.
- 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 전문가나 기관에 의뢰한다.

- **행복은 희망에서 나온다.**

행복은 산 정상에서 나오는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산을 오르는 길에서 느끼는 희망이다.

행복은 희망에서 나온다.

지금 걷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희망이 있다면
불행하지 않다.

-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17. 학부모 보건교육(성교육, 감염병, 미세먼지)

♣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1 디지털 성폭력 개념

가. 디지털 성폭력과 성폭력의 개념

- 1) 성폭력: 권력 또는 힘의 우위(물리적, 협박, 위계, 위력 등)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2)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기기(SNS, 카메라, 컴퓨터 등)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 저장, 유포, 협박, 전시, 판매하는 등의 온라인환경, SNS 등에서의 모든 폭력

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자기 주장적 표현

- 1) 성적 자기 결정권: '내 몸의 주인은 나'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성 접촉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 모두를 포함
- 2) 자기 주장적 표현: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표현

2 디지털 성폭력 유형

가. 오프라인 성폭력: 불법 촬영

- 1) 동의하지 않은 사진 촬영, 소지
- 2)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상대의 요청에도 삭제하지 않음.
- 3) 소지한 이미지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
- 4) 개인의 이미지를 강제로 획득

나. 온라인 성폭력: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재유포/제3자 유포

- 1) 온라인상에 개인정보 또는 이미지 유포
- 2) 계속 성적인 사진 전송을 강요

다. 온라인 스토킹: 사이버상 괴롭힘

- 1) 해킹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계정 해킹
- 2) 협박 전화 또는 계속되는 원치 않는 문자

3 디지털 성폭력 특성

가. 가해 행위의 집단성, 시공간 제약 없는 가해: 어디서든 누구든 촬영하고 업로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대다수가 방관자 또는 가담자가 되기 쉬움.

나. 빠른 전파성, 피해기록의 연속성: 다양한 플랫폼, 제목 변경, 편집 등으로 유통 범위 무한 확장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영원히 끝나지 않음.

다. 익명성, 비대면성: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을 약화시켜 명백한 폭력이 놀이처럼 되어 버림.

1 성인지 감수성

가.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인지 감수성은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인식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중학생 자녀가 겪는 학교 및 사회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나. 성인지 감수성 부족 시 나타나는 문제

- 또래 친구 사이에서 성차별적 발언 및 행동 반복
- 온라인 환경에서의 혐오 표현에 무감각
- 자아 존중감 및 공감 능력 저하

2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법

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 성차별적 표현 교정하기
 - “여자애들이 수학을 어려워해” 대신 “누구나 수학을 잘할 수 있어.”
 - “남자가 왜 울어?” 대신 “감정은 누구나 표현할 수 있어.”
- 미디어 콘텐츠 함께 보기
 - 드라마, 영화, 뉴스 등에서 성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장면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기
 - 자녀가 보는 유튜브, SNS 콘텐츠의 성차별적 요소를 인식하고 대화하기
- 다양한 진로 모델 소개하기
 -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직업군과 역할 모델을 자녀에게 보여주기
 - 여성 과학자, 남성 간호사 등 편견을 깨는 사례 소개
- 또래 문화 이해하기
 - 자녀가 또래 친구들과 사용하는 표현과 문화를 이해하고, 성차별적 언어와 행동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대화 나누기

나. 가정생활에서의 성 평등 의식

성 평등 의식의 중요성	부모가 점검해야 할 성 평등 의식 질문
- 중학생 시기는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성 평등 의식을 가지고 자녀와 대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내 성 평등은 자녀의 사회적 관계와 미래 가치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나는 자녀에게 성별에 따라 역할을 다르게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 나는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 나는 가정 내에서 성 역할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있는가? - 나는 자녀가 성차별적 발언을 할 때 바로잡고 있는가?

♣ 감염병 예방 교육

1 감염병 등교중지 안내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안내는 가정통신문으로 별도 안내

※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출석 인정 처리한다.

대상자	정의	격리기간 (등교중지 기간)	증빙서류	비고
확진환자	증상에 관계없이 진단검사에서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의 완치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소견서, 입원치료통지서 등	병원격리, 자가격리
의사환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어 격리가 필요한자	의사의 격리해제 소견이 있을때까지	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병원격리, 자가격리

♣ 감염병 환자 출결인정 기준

-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의심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
- 근거 : 초·중·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교육부 감염병 관리 매뉴얼 139쪽에 의거한다.

※ 학교에서 주로 걸리는 감염병의 종류

법정감염병	수두,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풍진, 홍역 등
비법정감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감염병은 아니지만, 의사가 전염력이 강하여 격리가 필요하다 인정한 질병. ● 유행성 각결막염(아폴로 눈병 포함), 무균성뇌수막염, 전염성홍반 등
인플루엔자	의사나 학부모가 등교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교중지 가능 ※등교중지기간: "발병 후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발견즉시 보고 및 신고해야 할 감염병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A형간염은 <u>보고절차 준수 및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u>

2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고위험군 정의	가. 정의 : 감염병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감염발생 시 합병증, 사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감염 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신부 등을 말함. ※ 보건학적 고위험군예시 : 임신부,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단, 합병증 없는 고혈압, 경증의 만성질환으로 약물 복용자 제외
고위험군 관리방안	- 보건학적 고위험군* 속하는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고 일정 기간 혹은 감염병 위험이 감소될 때까지 <u>등교 중지 및 출석 인정</u> - 선택적 등교(출근)를 하는 <u>해당 학생은 증빙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제출</u>

♣ 미세먼지 예방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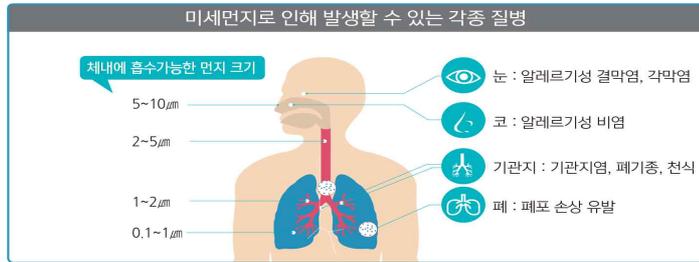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미세먼지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 서유럽 13개국 36만7천명의 건강자료 분석결과, PM_{2.5} 농도 5

µg/m³ 증가시 조기사망률 7%씩 증가(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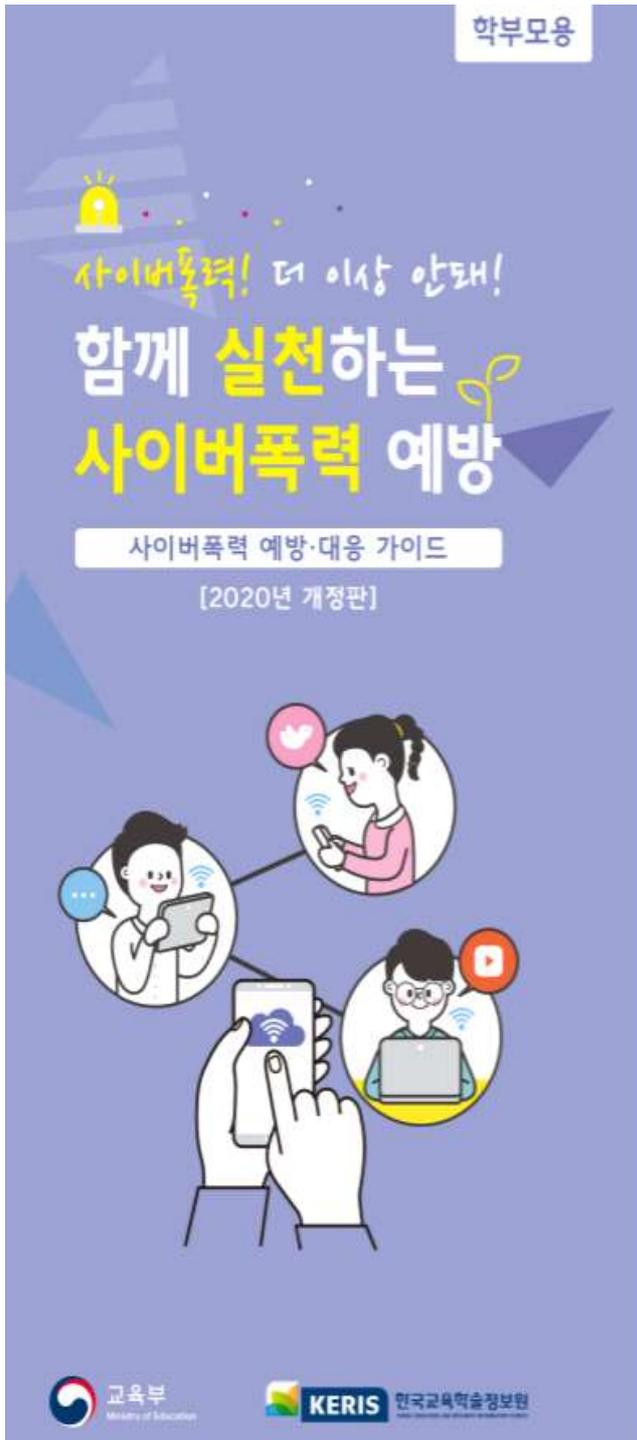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 (단,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18. 학부모 정보 통신 윤리 교육

1. 사이버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학부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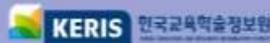


사이버폭력! 더 이상 안돼!

함께 실천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

[2020년 개정판]



+ 사이버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정보통신망과 기기를 이용하여 글, 이미지, 음성 등 언어적·비언어적 형태로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폭력은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폭력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이버폭력은 기술적·개인적·가정적·학교·사회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은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은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적습니다.

시공간적 제한 없이 사이버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가해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 때문에 다수가 손쉽게 사이버폭력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전파성과 복제성이 높습니다.

인터넷, SNS를 통해 피해자를 공격하는 소문이나 허위사실 등이 빠르게 복제 확산되어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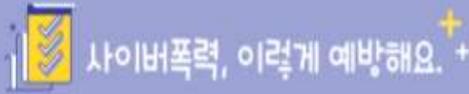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에 기록된 내용은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완전한 삭제가 어렵습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평생 기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학교폭력과 같이 힘의 불균형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우 관계는 중요하고 민감합니다. 교우 간 힘의 불균형 관계에서 사이버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이버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01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03

평소에 대화를 통해 바른 언어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05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 사용법을 익히고, 자녀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합니다.

07

자녀가 사이버상에서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혹은 알지 못하도록) 관리합니다.

02

음란물과 폭력물 등 유해정보를 차단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04

사이버상의 상대방을 현실세계처럼 존중하도록 알려줍니다.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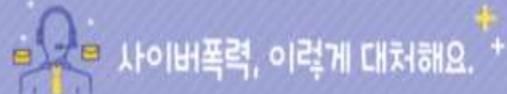
자녀와 사이버폭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사이버폭력 신고방법, 피해 시 도움 요청 기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08

자녀가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어른과 먼저 상의할 것을 강조합니다.

사이버폭력, 이럴 때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 ✓ 자녀가 갑자기 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를 삭제한다.
- ✓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 ✓ 컴퓨터 혹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 ✓ 불안한 기색으로 스마트 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 우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스마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 ✓ SNS 상태 글귀나 사진의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인다.
- ✓ 부모가 자신의 스마트 기기를 보거나 만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 온라인에 접속한 후 또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괴로워 보인다.



1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2 자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3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확인합니다.

4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5 가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6 학교, 전문 기관 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7 학교나 경찰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며 전체 처리 과정을 확인합니다.

8 피해·가해 자녀의 치료나 교육에 부모도 함께 참여합니다.



3. 사이버 폭력, 이것이 궁금해요?

QnA 사이버폭력, 이것이 궁금해요.

사이버폭력,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이버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고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이버폭력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사이버폭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자녀가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른과 먼저 상의할 것을 강조하고, 사이버폭력의 신고 방법과 도움기관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함부로 글쓰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무심코 사이버상에 올린 정보가 타인에게 피해가 되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올바른 언어습관과 신중히 생각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SNS에 빠져서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우리 아이, 어떻게 다가갈까요?

자녀의 관심분야에 주의를 기울이고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함께 SNS에 참여하는 방법을 시도해보면 자녀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 시 가급적 공감의 표현("그렇구나.")와 개방형 질문("짜워서 기분 나쁘지?" → "지금 기분이 어떠니?")을 사용합니다.

정보통신기에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사이버안심존' 앱을 통해 자녀의 스마트 기기 이용행태를 점검하고 이용시간을 관리·지도함으로써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에듀넷 티-클리어
 <사이버폭력 예방·정보윤리교육> (도관도관)
www.edunet.net / www.dorandoran.go.kr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윤리교육 자료 제공
 ※ 교수·학습자료, 학부모 교육자료, 학교단위 예방교육 사례

학생위기상담 종합서비스
www.wee.go.kr
 온라인 고안상담 서비스 제공(익명, 비밀)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www.cyber1388.kr
 온라인 고안상담 서비스 제공(비밀상담, 실시간 채팅 등)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www.cyber.go.kr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서비스 제공

안전 Dream
www.safe182.go.kr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신고·상담서비스 제공

푸른나무재단
<http://btf.or.kr/>
 학교폭력 온라인 상담 제공

스마트쉘 센터(인터넷 중독 상담센터)
www.iapc.or.kr
 인터넷 과다사용 관련 상담 제공(게시판, 메신저 등)

모바일 서비스

- 57 -

19. 위(Wee)클래스 상담실 운영 계획

학생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용진중학교 상담실**이 운영됩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부모님의 관심이 아이들의 행복입니다.

[용진중학교 상담실 이용 안내]

구 분	내 용
❖ 대상 및 시간	대상: 학생 및 학부모 시간: 평일 8시 30분 ~ 16시 30분
❖ 상담내용	대인관계, 학업문제, 진로문제, 자기이해, 학교부적응, 심리적 불안 등
❖ 상담신청 방법	사전 예약: 방문 신청(용진중 3층 상담실), ☎ 전화 신청 : 070-4716-2437
❖ 상담진행 절차	상담신청(의뢰)서, 학생(학부모)동의서 제출 → 상담교사 일정 협의→ 초기면담 후 진행 ※ 교과시간 : 담임/교과담당 교사의 허락 → 상담진행
❖ 상담자	전문상담교사
❖ 참고사항	1. 모든 상담은 <u>비밀보장 원칙</u> 단, 비밀보장의 예외의 원칙 적용 시 학교 관계자 및 보호자에게 알림 (예외 경우) - 스스로를 해치려는 의도,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혹은 방임 -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감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 등

[용진중학교 상담실 연간 운영 계획]

분류	항목	내용	추진일정
심리상담	개인상담	- 1:1 대면으로 학생 스스로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도움을 주는 활동	연중 수시
	집단상담	- 2명 이상의 집단을 구성하여 대인관계 속의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돕는 활동	
	심리검사	- 학생의 심리·정서·행동상의 어려움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검사	
상담지원 및 활동	또래상담부 동아리	- 또래 친구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여 또래 상담 활동 - 즐겁고 건강한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 진행	3월~12월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추후 관리 지원	-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에 대한 상담 - 외부기관 심리치료 의뢰지원 - 1학년 대상 검사 실시, 관심군 해당 학생 관리	4월~
	상담주간 운영	- 상담실 안내 및 인식 개선	학기 초
	외부 유관기관 연계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의뢰	필요시
행사	시험기간 이벤트	- 시험 불안을 감소시키고,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	시험기간
	친구사랑주간	- 친구 관계 및 우정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	9월
	사과데이	-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활동	10월

※ 위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 학생 성장을 위한 독서인문교육

1 2025학년도 독서인문교육 이렇게 추진합니다

-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환경 조성하겠습니다.
- 교사, 학생, 학부모 체험중심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우리 학교의 특색있는 **1교 1독서 브랜드**를 제정·운영하겠습니다.
- 독서로 시스템을 활용하여 독서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내실있는 독서인문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 「독서로」 활용 방법

- **사용기기:** 일반 컴퓨터 및 태블릿, 핸드폰에서 활용 가능
- **이용방법**
 - 누리집 접속: <https://read365.edunet.net/>
 - 회원가입
 - 로그인(에듀넷 티클리어 계정 혹은 네이버, 카카오 등 소셜 로그인)
 - 대출증 번호 인증(학교 관리자에게 문의)
 - ※ 우리학교 도서관 연계를 위하여 대출증 번호 인증이 필요합니다. (학교 관리자 문의)
 - ※ 자세한 활용 방법은 ‘독서로 간편 매뉴얼[독서로>안내>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3 「독서로」 활용 예시

① 도서검색	② 추천도서	③ 독후활동 둘러보기
통합검색, 우리학교 도서검색	인기도서, 신작도서, 기관 추천	학생 독후활동, 독서퀴즈, 독서골든벨, 밸런스게임, 독서마라톤 등
		

21. 자기주도적 삶의 기초역량, 기초학력 보장

1 추진 근거 및 목적

□ 추진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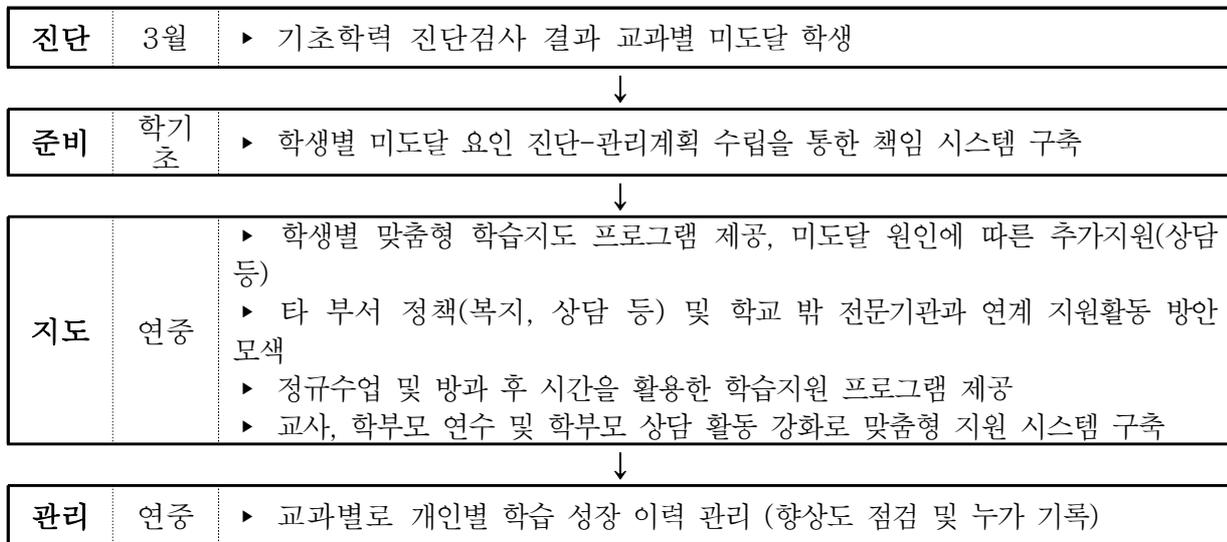
- 기초학력 보장법(2021.9.24.제정, 시행령2022.3.25.제정)
- 2025학년도 중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 계획 및 운영비 교부(중등교육과-3671, 2025.3.14.)

□ 목적

-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실현
-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학습지원을 통해 자기주도적 삶의 기초역량 형성

2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관리

1.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절차



2. 학습부진대상학생 학습성장 이력관리 계획

- 학습부진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실현
-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학습지원을 통해 자기주도적 삶의 기초역량 형성

3 세부 사업

1. 두드림학교

2.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3. 기초학력 속속 테마캠프 운영

22. 교육복지중점학교 운영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란?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 사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점학교 2년차로 전체 복지대상 학생들 초기면담 및 수시 면담을 통해 학생 파악에 집중
- 학생의 통합 성장을 위한 개별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체계적·전인적 학생 발달을 지원하여 학생 적응력을 높이고 삶의 긍정적 태도 강화에 도움
- 교내 회의, 지역사회 네트워크회의,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조성 및 교육복지 가치 공유

2. 교육복지 중점학교 운영 세부 계획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학생파악	자아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 전교생 ■ 장소: 각 해당 교실 ■ 기간(주기): 2025.03.02. ~ 2025.05.30. ■ 내용: 학생파악을 위한 학급스크리닝 검사 실시
	학생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 34명(대상 34명) ■ 기간(주기): 2025.03.02. ~ 2026.02.28. ■ 장소: 교육복지실, 대상가정, 유관기관 ■ 내용: 집중사례관리 대상 및 신입생 스크리닝, 담임추천을 통해 발굴된 학생 면담 실시
	가정방문 및 기관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 10명(대상 10명) ■ 기간(주기): 2025.03.02. ~ 2026.02.28. ■ 장소: 대상학생 가정 ■ 내용: 담임교사, 유관기관과 함께 사례관리 대상학생 및 신규 교육복지 대상학생 가정환경 파악
맞춤형지원1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 7명(대상 7명) ■ 장소: 학교 ■ 기간(주기): 2025.03.02. ~ 2026.02.28. ■ 내용: 위기학생 발생 시 상황에 따른 긴급지원 및 전문가 슈퍼비전
	심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 8명(대상8명) ■ 장소: 학교 및 심리센터 ■ 기간(주기): 2025.03.02.~2026.02.28 ■ 내용: 심리·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사제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 6명(대상6명) ■ 장소: 학교 및 전주, 완주 시내 ■ 기간(주기): 2025.03.02.~2026.02.28 ■ 내용: 사제멘토링을 통한 교직원의 학생 파악 및 학생 학교 적응
	가족기능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 1가정(대상 1가정) ■ 기간(주기): 2025.03.02. ~ 2026.02.28. ■ 장소: 학교, 가정 및 전주, 완주 시내 ■ 내용: 가족기능과 학생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심리·정서적 지지와 관계 개선 도모
맞춤형지원2	진로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 12명(대상12명, 2,3학년 2집단으로 진행) ■ 장소: 학교 ■ 기간(주기): 2025.03.02.~2026.02.28 ■ 내용: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재고 및 강점을 찾아 고등학교 진학 및 진로 목표설정
	감정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 6명(대상6명) ■ 장소: 학교 ■ 기간(주기): 2025.03.02.~2026.02.28 ■ 내용: 자기이해를 통한 자존감 향상 및 타인에 대한 배려 공감능력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또래관계 도모
	관계기술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 6명(대상6명) ■ 장소: 학교 ■ 기간(주기): 2025.03.02.~2026.02.28. ■ 내용: 사회성이 부족하고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 및 타인과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집단프로그램 진행
	방학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 5명(대상5명) ■ 장소: 학교 및 전주, 완주 시내 ■ 기간(주기): 2025.03.02.~2026.02.28. ■ 내용: 시설보호중인 학생 중 사회성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
	미디어리터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 12명(대상12명, 남,여 2집단) ■ 장소: 학교 ■ 기간(주기): 2025.03.02.~2026.02.28. ■ 내용: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법과 사이버 범죄에 노출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
환경조성	교육복지실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 123명(대상 34명/일반 89명) ■ 장소: 학교 ■ 기간(주기): 2025.03.02. ~ 2026.02.28. ■ 내용: 복지실 이벤트 진행(신입생 이용교육, 상시)
	위기학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 25명(지원 대상 소속 학급) ■ 장소: 학교 ■ 기간(주기): 2025.03.02. ~ 2026.02.28. ■ 내용: 전문인력을 초빙하여 1~2회 학급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
	지역네트워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완주 및 인근 지역 ■ 기간(주기): 2025.03.02. ~ 2026.02.28. ■ 내용: 각 협의체 기관 순회
	아침결식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1, 2, 3학년 신청자 ■ 기간(주기): 2025.03. ~ 2026.12. ■ 내용: 수요 조사에 맞춰 아침 간편식 제공



2025학년도 학교 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총괄)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가. 세입 내역	448,365	294,204	154,161
-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404,948	262,067	142,881
- 학부모부담수입	33,717	27,037	6,680
- 행정활동수입	8,200	3,100	5,100
- 전년도이월금	1,500	2,000	-500
나. 세출 내역	448,365	294,204	154,161
- 인적자원운용	3,700	5,020	-1,320
-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174,546	74,982	99,564
- 기본적교육활동	50,199	50,292	-93
- 선택적교육활동	16,896	15,713	1,183
- 교육활동지원	69,587	23,991	45,596
- 학교일반운영	131,437	123,206	8,231
- 학교시설확충	0	0	0
- 학교재무활동	2,000	1,000	1,000

※ 상세내역은 학교 홈페이지 (<http://yongjin.ms.kr>) 열린마당/행정실/예결산공개 참조

■ 웃음은 초콜릿 2,000개의 에너지를 가졌다.



미소를 짓는 행동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증가하며,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압이 낮아진다.

또한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적어진다.

1번 웃으면 초콜릿바 2000개를 섭취하는 것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다.

웃는 얼굴은 수명과도 관련이 있다.

- 크리스틴 포레스, '무례함의 비용'

VI

학부모회 조직

♣ 학부모회 역할

1 학부모회란?

-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의 전체 학부모로 구성되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기구임.

2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시행규칙

4 학부모회의 기능(제5조)

-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지원
-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5 학부모회의 구성 및 조직

- 학부모회 회원은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양부모 포함) 등 보호자로 함.
-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을 둘 수 있으며 총회에서 전체 학부모의 투표로 선출함.
- 학부모회의 조직

구분	총회	대의원회	학년·학급·기능별 학부모회
구성	•전체 학부모	•학부모회 임원 •신하 학부모회(학년·학급·기능별) 대표 등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급별 학부모 •기능별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
기능 · 역할	•임원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 •학교운영 주요사항 논의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학년별, 학급별 특화된 사항 협의 •도서관, 급식, 안전지도 등 각종 봉사 관련 모임

※ 기능별 학부모 모임이 학부모회에 속하여 운영될 수 있으나, 기능별 학부모 모임이 전체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부모회처럼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담임 선생님 협조사항

- ▶ 학급별 모임에서 각 반별로 대표 1명, 회원 최소 2명 이상 선출해주세요.

♣ 학부모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조례 제6조(학부모회)에 의하여 「용진중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부모회는 제6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모 활동에 관한 사항
2.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안할 사항
3. 학부모 동아리 개설,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5. 학부모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제안할 사항

제3조(구성) ①학부모회는 학년별, 학급별 학부모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학부모 대표회 등을 둘 수 있다. ②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참여에 의하여 구성한다. ③임원은 학부모들이 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학부모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하고 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5조(회의 소집) 위원장은 재적위원 1/4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회의 소집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학부모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칙으로 정하되,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학부모회의 회의 시간은 학부모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규정의 제·개정) 본 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본 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부모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적인 운영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Memo.....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 어릴 적 나에게 많은 꿈이 있었고,
그 꿈의 대부분은 책을 읽을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빙게이츠-**



용진중학교

주 소	5535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상운길 11
전화번호 (063)	교장실 : 243-7064 교무실 : 243-3047 행정실 : 243-7006 F A X : 243-0939
홈페이지	http://yongjin.ms.kr